

2017년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2017 11월 6일



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다시 되새기며, 2017년 정기국회 계류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아무쪼록 이 의견서가 개혁과제의 실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 11. 6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산하에 상설기구인 입법감시태스크포스를 두고, 평소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정 등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연구해 온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매해 정기국회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민변의 15개 위원회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여러 의제들을 중심으로 계쟁 법률안의 검토를 진행하였고, 입법감시태스크포스는 그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12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총 77개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법 적극저지'와 '입법 적극촉구' 방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1년 사이,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격변의 터널을 지나 왔습니다. 1년 전 가을, 박근혜 정부의 헌정질서 문란에 분노한 촛불민심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추운 겨울 내 촛불민심은 꺼질 줄 모르고 타올라 의회를 압박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인하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마침내 새로운 봄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5월 9일, 새로운 정부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고 출범하였습니다.

적폐의 청산과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도약은 비단 행정부의 수반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개혁과제들이 법률의 형식으로 처리되어 국민의 일상에 뿌리박고 항구적이고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목소리는 높는데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법률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개혁 갈증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군부 독재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하여 민주화의 시대를 열었고, 다시금 무도한 정부에 맞서 헌정 질서 하에서의 평화적인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주주의의 전진을 쟁취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로 눈을 돌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회가 지금처럼 주어진 책무를 방기한다면 곧 국민과 역사로부터 그 책임을 엄중히 추궁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국회가 정파 간 권력다툼의 장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여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장으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변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법률가로서 시민으

< 자 >

I. 2017 정기국회 민법 핵심법안 목록표	8
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3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III.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2.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20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재단 해산)	22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유)	23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운영)	25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6
IV. 기획재정위원회	28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인하)	28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인상)	28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4.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31
5.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36
V. 법제사법위원회	37
1. 약칭 '공수처' 법률안	37
2.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40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권리 확대)	41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3
5. '재정신청 확대' 관련 법안	44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시설)	47
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범소년)	48

9.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49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1
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3
12. 약칭 '스토킹 처벌법' 법률안	54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5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57
1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8
1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9
1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2
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4
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66
22. 징벌적 배상법안	68
VI. 보건복지위원회	70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1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72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4
VII.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7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7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8
VIII. 여성가족위원회	79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9
IX. 정무위원회	82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2
2. 대리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속고발권)	83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편취방지)	85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규정삭제)	85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6
X. 정보위원회	88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88

2.	89
3.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91
XI. 정치개혁특별위원회	94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연령 인하)	94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97
XII. 행정안전위원회	100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0
2.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103
3.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	104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6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7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0
7.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11
XIII. 환경노동위원회	114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114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해고)	115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117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명세서)	120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차별금지)	121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개념 확대)	122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회사 대체인력 투입금지)	123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행위 손배책임 제한)	125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6
10. 산업안전보건법칙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28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30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2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33
1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134

I. 2017 정기국회 민변 핵심법안 목록

1. 정기국회 핵심법안 선정활동

민변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 2009년에는 10개 민생법안, 2010년 30개 법률안, 2011년에는 50개 법률안, 2013년에는 60개 법률안, 2014년에는 43개 핵심법안, 2015년에는 54개 법안,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17년 제 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언론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디지털정보위원회)와 4개의 TF(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세월호 참사 대응 TF, 정치관계법개혁TF, 집회의 자유 연구 소모임)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과학교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민변 선정 77개 법률안 목록

입법 적극촉구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학영 의원 발의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 · 한진규 의원 발의 3.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 윤영일 · 인재근 · 이용주 · 박주민 의원 발의 4. 약칭 '공수처' 법률안 / 박범계 · 이용주 · 노회찬 · 양승조 · 개혁위 발의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연령 인하) / 이재정 · 송옥주 · 정춘숙 의원 발의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 소병훈 · 박주현 · 김상희 · 박주민 의원 발의 7.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 천정배 의원 발의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 의원 발의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 · 윤소하 의원 발의 10.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 윤종오 의원 발의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김중훈 의원 발의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 해고) / 이인영 · 노회찬 · 윤종오 · 문진국 · 윤영일 의원 발의 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 이찬열 · 한정애 · 김상화 · 유승민 · 박홍근 · 신창현 · 송옥주 · 소병훈 의원 발의
---------	---

적극촉구	<p>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명세서) / 송옥주 의원 발의</p> <p>1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차별금지) / 김상화 의원 발의</p> <p>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득 · 이정미 · 권미혁 · 김상화 의원 · 정부 발의</p> <p>17.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 진선미 의원 발의</p> <p>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개념 확대) / 윤후덕 · 송옥주 · 한정애 의원 발의</p> <p>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회사 대체인력 투입 금지) / 우원식 의원 발의</p> <p>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손배책임 제한) / 강병원 의원 발의</p> <p>2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상정 의원 발의</p> <p>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윤경 의원 발의</p> <p>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 의원 발의</p> <p>2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 · 강창일 · 정양석 의원 발의</p> <p>2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p> <p>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p> <p>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p> <p>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인상) / 박주민 · 노회찬 의원 발의</p> <p>2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재단 해산) / 유성엽 의원 발의</p> <p>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 / 이동섭 의원 발의</p> <p>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운영) / 윤소하 의원 발의</p> <p>3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박주민 의원 발의</p> <p>33.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 / 심상정 · 김중훈 의원 발의</p> <p>3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 · 심상정 의원 · 정부 발의</p> <p>3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수 의원 발의</p> <p>3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익표 의원 발의</p> <p>3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의원 발의</p> <p>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화 · 이주영 · 진선미 · 정성호 · 박대출 · 박남춘 의원 발의</p> <p>3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범소년) / 권미혁 의원 발의</p> <p>40. 약칭 '스토킹 처벌법' 법률안</p>
------	---

입법 적극촉구	<p>/ 남인순 · 김정훈 · 정춘숙 · 김상화 · 이동섭 의원 발의</p> <p>4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화 의원 발의</p> <p>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 · 남인순 · 이석현 의원 발의</p> <p>43.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 이용득 · 박재호 의원 발의</p> <p>44.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 의원 발의</p> <p>4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 · 남인순 · 소병훈 · 김해영 · 박광운 · 황주홍 의원 발의</p> <p>4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소하 · 정춘숙 의원 발의</p> <p>47.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 김해영 의원 발의</p> <p>4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회찬 의원 발의</p> <p>4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 의원 발의</p> <p>5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혜선 · 권은희 · 진선미 · 소병훈 의원 발의</p> <p>5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최명길 · 이원욱 의원 발의</p> <p>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 · 박주민 의원 발의</p> <p>53. 징벌적 배상법안 / 박영선 · 금태섭 · 박주민 의원 발의</p> <p>5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 의원 발의</p> <p>5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 의원 발의</p> <p>5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 · 신경민 의원 발의</p> <p>5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태섭 의원 발의</p> <p>5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속고발권) / 민병두 의원 발의</p> <p>5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편취방지) / 김기선 의원 발의</p> <p>6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 의원 발의</p> <p>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 · 박주민 의원 발의</p> <p>62. '재정신청 확대' 관련 법안 / 박영선 의원 발의</p> <p>63. '경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 표창원 · 금태섭 의원 발의</p> <p>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권리 확대) / 금태섭 의원 발의</p> <p>6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형수 의원 발의</p>
입법 적극저지	<p>1. 국가사이버안보법안 / 정부 발의</p> <p>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인하) / 추경호 의원 발의</p> <p>3.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 홍문표 의원 발의</p> <p>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이명수 의원 발의</p> <p>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 의원 발의</p>

6.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이학재 의원 발의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창원 의원 발의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규정삭제) / 윤상직 의원 발의
9.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기헌 의원 발의
10.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 장제원 의원 발의
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정부 발의
1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시설) / 정성호 의원 발의

II.

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01022)
소관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21.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축구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4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법안임.

○ <보완 내용 : 이사의 자격 요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신분보장과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중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언론위원회

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21)
소관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21.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정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 제2항 및 제3항). ▪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정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촉구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정,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

-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는데 본 법률안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됨.
- <보완 내용 : 이사의 자격 요건>
 -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신분보장과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 있음(안 제47조제4항 및 제48조제1항).
 -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중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언론위원회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1027)
소관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21.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명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감당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 및 통신의 규제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언론위원회

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020)
소관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21.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6항단서 신설). ▪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

- 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 <보완 내용 : 이사의 자격 요건>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신분보장과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 있음.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언론위원회

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27) (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16)
소관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7. 27. (2) 2017. 5. 17.
대표발의	(1) 이용득(더불어민주당) (2)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안 제2조의 3 신설)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 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안 제105조의 2 신설) (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9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2조의3 신설). ▪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주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주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안 제10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음(안 제10조 제4항 단서 신설). ▪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0조의2 신설). ▪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km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고려대상 단층으로 하여야 함(안 제11조제8호 신설). ▪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함(부칙 제3조).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추구

3) 주요 검토내용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2008227)

• 사전배려원칙의 도입

원자력 발전소 주변 감상선암 발병율의 증가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건은 방사선 노출 위험에 대한 더욱 엄중한 국가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 원자력안전법상에는 원자력 이용 시설이 30년이상 장기 운영되며,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은 1만년 이상의 초장기 운영을 예정하고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 및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환경악화와 국민의 건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배려원칙을 도입하여 원자력 이용시설과 국민안전 또는 환경보호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음.

• 건강영향조사 청원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두려움은 실제 감상선암의 유의미한 증가율로도 확인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사법적 구제방법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과정에서 감정비용을 부담하며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정보의 편중성과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원자력 이용시설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이용시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실시의 청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 기준 추가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 관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고리 1호기 폐로 결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해체 문제에 직면하였음,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는 기술적 재정적 문제를 제외하고도 폐로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최종 매립장인 고준위 방사선폐기물처리장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 그러나, 해체에 관한 현행법령체계는 원자력안전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기준으로 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체비용과 비용에 관한 평가결과와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면서 재원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그 처리비용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수 없다는 점이 후쿠시마 사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상에서도 보험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중점적 부분은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짐

특히 해체에 관한 사항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해체에 관한 기술적 재정적 사항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별도의 해체공정에 대한 감독과 검증절차, 해체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저장, 임시보관의 편법에 대한 보완, 해체후 원자력 이용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2006916)

• 핵단지화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강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원자력발전소 단지화는 심각한 수준이며, 주변 인구밀집지역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가 현실화되었을 때에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핵단지화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존 부지에 원자로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부지에 추가 원자로등의 건설허가를 받았으나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원자력발전소 입지안전성 강화

경주지진으로 촉발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개정안은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km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고려대상으로하여 부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원자로 건설을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사전 공사를 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무력화방지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로 건설을 위한 부지 사전승인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원자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무력화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원자로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원자력안전법이 특별법임을 명시하여 위와 같은 무력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III.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403)
소관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자	2016. 6. 17.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 당사자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임.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선거 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의 하향 필요함. 이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9조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과거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어, 지방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교육정책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구조적 기반이 취약하였음. 따라서 교육감선거가 교육주체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어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었음.
-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본질적인 교육제도의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에 청소년들은 허덕이고 있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교육 아닌 교육 속에서 학생들은 공부에 지치고 불행을 느끼며, 그 속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꿈을 잃기도 함.
-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청소년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이나 교육 정책에 전혀 참여할 수 없음.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 정치 활동, 선거 운동 등도 금지되어 있음.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는 학교에서나 교육계에서나 사회 어디에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교육을 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선거는 결국 어른들이 원하는 정책을 강요받도록 하여 교육의 진정성을 떨어뜨리고, 교육주체들의 의사

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음.

- 교육당사자가 아닌 성인인 유권자들은 투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그러나 그 책임은 고스란히 청소년들의 몫이 됨. 청소년들은 교육제도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그 관심도 상당히 높음.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반장선거, 학생회장선거 등을 통해 선거과정에 오래도록 참여해왔고, 교육을 통해서 선거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감수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 청소년들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투표한 한 표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한층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임.
-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교육감 선거의 유권자가 된다면 이는 전체의 유권자 중에서 약 5.6% 정도가 됨.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미한 숫자이나, 진정성 있는 교육제도 마련과 선거제도의 긍정적인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기대됨.
- 이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1403)에 적극 찬성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2.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 (2000359)
소관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자	2016. 2. 27.
대표발의	홍문표 (바른정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을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으로 함(안 제9조). 시·도지사가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산악관광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換地)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업시행자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은

	<p>친환경적으로 조성·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산악 관광개발사업의 조성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두고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입법안은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를 도입하여 국유림, 보전산지, 농지, 초지, 백두대간 보호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시장으로서 산악관광개발의 근거를 마련하며,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구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고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보호법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입법안은 요존 국유림, 백두대간 보호지역, 공익용 산지등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여 공공재로서 각종 보호지역과 산지를 사실상 사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대상 산지가 핵심구역이 아닌 완충구역에 해당된다고는 하나,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보전과 서식지 단편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역으로 완충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자행될 경우, 기존의 산림보호체계를 위해 노력해 왔던 성과가 일거에 무력화될 수 있을 것임.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사업대상 지역과 목적, 각종 특례의 내용은 2004.에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으므로, 굳이 진흥구역제도를 통한 추가 개발편의 제공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없다 할 것임.
-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등 27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공익보호장치로서 인허가제도를 의제처리하고 있어 개발과 보존사이의 이익형량을 형식화하여 개발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산악관광진흥구역제도는 국토계획법 체계와 체계적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보호 법률들의 공익성 보호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의 난개발을 가져올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환경보전위원회

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재단 해산)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27)
소관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자	2017. 9. 13.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 이행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됨 ▪ 이로 인해 국고 등으로 귀속된 재산은 기금 조성을 통해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는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여,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폐교 시(강제 및 자진폐교 포함) 교비회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을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하였을 경우, 감사처분 회령액 등을 회수할 수 없게 하고 잔여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 서남대 폐교사태 등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이에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국고 등으로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위 법률안은 학교법인 임원 등이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한다는 규정을 신설함.
- 또한 국고 등에 귀속된 잔여재산은 현행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 용도 외에 “대학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 개혁에 대비하겠다는 것임.
- 사립학교법 제35조가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해산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재산이 사립학교 교육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고, 교비회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영자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을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정하여서 잔여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할 공익적 필요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위 법안은 타당함.
- 또한 폐교 대학 교직원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 기금 성격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립학교법 제35조 제3항을 개정해서 폐지 대학 학생의 등록금 환급액, 해산 학교법인과 폐지 대학의 소속 교직원의 퇴직 시 명예퇴직 수당 또는 보상액, 해산 학교법인과 폐지 대학의 소속 교직원 연직 시 생계안정·재취업 및 직업훈련 등의 비용 등 기타 사립학교의 구조개혁을 지원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위 법안은 타당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

1) 법안개요

(의안번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92)
소관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자	2016. 9. 5.
대표발의	이동섭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등. (안 제62조 제1항) ▪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교육청이 위촉하고(교육청에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교육감), 해당학교의 교원이나 학교법인의 이사는 제외됨 (안 제62조 제3항) ▪ 외부위원을 위원으로 변경함 (안 제62조 제4항, 제62조의2)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법률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해당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처리하고 있었음,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를 야기함
- 비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징계처분 없이 퇴직한 교직원이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월등히 많다. “2013~2017년 초중고교 감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중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퇴직불문”으로 처리된 경우가 국공립학교와 비교하여 4배이상의 차이가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에도 해당교원이 실제 중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국공립학교(86.4%)에 비해 사립학교(47.5%)가 현저히 낮은 상황임.
- 특히 사립학교에서 징계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처분요구를 바로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사례도 많음. 2016년 서울지역의 사립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총 718건의 징계 및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경우가 41건에 달하는데 이는 공립학교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경우가 4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음. 일례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학교급식 비리 등의 이유로 총알고 행정실장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인 총알학원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또 같은 해 서울 J여고 모

-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을 적발해 학교법인에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따르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을 받는 서울 송의초등학교도 시교육청의 관련 교원 해임·징직 등 중징계 요구에 불응하는 상태임
- 징계를 대폭 낮추는 사례도 빈번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학생 성희롱·성추행에 연루된 서울 서문여중 교사 5명에게 중징계 등을 요구했지만, 학교법인 성산학원은 교사 1명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나머지에게는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등으로 감경하였음. 신입생 입학성적 조작 등의 혐의로 서울시교육청이 파면(중징계)을 요구했던 하나고등학교 교장의 징계는 학교법인을 거지며 견책(경징계)으로 낮아진바 있음
-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258명의 교직원 이 성범죄 등에 따라 징계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111명의 교직원들은 견책,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고 여전히 교직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렇듯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에 비해 교육청의 요구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은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실제 징계권한이 해당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임, 교육부·교육청은 징계처분이나 징계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로 징계를 집행할 수는 없는데, 실제 사립학교는 대부분 이사장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식 권력구조로 교사들이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몰라 피하는 경우가 빈번함,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이사장, 교장 등과 친인척일 수도 있고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학교 자체도 평판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드러내 파헤치기보다 알아서 해결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크다 할 것임.
- 현재의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징계위원회는 비위 교원을 감싸주거나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분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옹호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음. 징계수위를 낮춘 것 이전에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권한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보복적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비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잖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사립학교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비위교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관할 교육지원청 내지 교육청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징계권한을 이전함이 타당
- 동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이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어 처리하자는 것임. 사인이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 설립한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현재 국가는 사립학교에 사립학교재정 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인건비·운영비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바, 아무리 사립이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무성은 필요하며, 사립학교는 공공성을 지닌 교육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다름없으므로 관할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징계는 이미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를 두어 이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는바, 다른 사립학교까지 이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운영)

1) 법안개요

(의안번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56)
소관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자	2017. 2. 15.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장 등 임원에 대하여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의 이사장의 학교법인 경영권의 양도·양수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원에 의한 사립학교의 경영과 이를 통한 사립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본래의 건학 입법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의 임면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경영권의 무분별한 양도·양수를 방지하고 사립학교 경영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2항 및 제20조의2 제1항 제4호·제5호).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사립학교법인 운영권 양수도 계약의 처벌 여부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그러나 위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이 명확한 처벌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어, 학교법인 경영권 양수도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어 왔음.
- 학교법인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법인은 비영리성 및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양도·양수를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그러한 공공적 성격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임.
-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에 속하므로 비영리법인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사립학교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그 수익을 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전용할 수 없으므로 이로서 학교법인의 비영리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또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실비변상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사립학교법

제26조 제1항). 이러한 사립학교법 규정을 볼 때 이사로서의 지위를 재산상 이익을 얻는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학교법인 운영권을 획득한 후 유상 양도하는 것은 학교법인 운영자들로 하여금 정관에 규정된 본래의 목적보다는 영리 획득에 몰두하도록 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법인을 유상으로 양수한 자가 그 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서 배임이나 횡령을 자행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됨.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양수인인 피고인이 교사 채용을 발미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임. 학교법인 운영권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학교법인 설립자가 사망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그의 상속인이 학교법인 운영권을 승계하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권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과세는 제도 또한 없는 상황에서 학교법인 운영권을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설립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도록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부작용들을 예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시 학교법인 양도 또는 이사회 결의와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공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이 사회적으로 요청되어 왔으며, 따라서 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개정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89 / 2005357)
소관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자	2016. 3. 15. / 2017. 2. 1.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권의 주체인 학생에게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 학생의견제안 : 학교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도의 조례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진선미 의원 안 제32조 제2항 및 제34조의 2 신설). 학생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경민 의원 안 제34조 제3항 신설).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추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주체는 학부모, 교사, 지역위원으로 학생은 구성원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는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 대표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만이 있을 뿐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2).
-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학생들에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거나 학생대표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을 차단하여 단순한 형식상의 의견수렴절차에 그치고 있다.
- 이는 학생들에게 집단 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참여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권의 주체이자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학생들을 보호의 대상이자 수동적인 존재로 머무르게 한다.
- 이미 시행령에 학생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규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교육권을 교육을 받는 자의 능동적인 권리이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는 주체적인 인간상을 형성하는 권리의 하나로 본다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생 본인의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학생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및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실질적인 학습 환경의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여 구체적 법률위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또한 기존 시행령은 국·공립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립학교 학생들은 재단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기에 위 입법추구법안은 사립학교의 경우 정관에 학생들의 운영위원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면서 그 불균형을 시정하고 있다.
- 결국 위 입법추구법안은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의견을 제시받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할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통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위 입법추구안은 타당하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IV.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인하)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13)
소관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자	2017. 9. 12.
대표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7%로 인하함(안 제55조제1항).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8%로 인하함(안 제55조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법인의 조세부담률이 OECD평균에 비하여 낮음. 국제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최근 세법개정을 통하여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정비하는 등 다른 세목의 세수가 증가함. 법인세율인상을 통해 세부담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 그 동안 법인세율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크게 늘지 않았음. 정부도 기업소득을 투자·임금·배당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설한 바 있으며, 동 제도의 개선안을 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제56조에 담고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인상)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82)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53)
소관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6. 16. (2) 2016. 11. 7.
대표발의	(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2) (정의당)
주요내용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82)
- 국제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대비 소득세가 42.3조원에서 60.7조원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44.9조원에서 45.0조원으로 0.1조원 증가한 데 그쳤음. 최근 세법개정을 통하여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정비하는 등 다른 세목의 세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균형적인 세수기반 확충을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최고구간 22%의 법인세율은 OECD국가의 평균 최고세율 22.7%(2016년 기준)에 비하여 소폭 낮은 수준이며, 조세부담률도 17.9%로 OECD 평균 25.1%(2013년 기준)에 비하여 낮으므로 세율인상을 통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 매출액이 높은 기업의 조세감면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증가하고 있는 않는 등 조세감면의 상위기업 집중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53)
- 현행 최고구간 22%의 법인세율은 OECD국가의 평균 최고세율 22.7%(2016년 기준)에 비하여 소폭 낮은 수준이며, 조세부담률도 17.9%로 OECD 평균 25.1%(2013년 기준)에 비하여 낮으므로 세율인상을 통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수입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대비 소득세가 42.3조원에서 60.7조원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44.9조원에서 45.0조원으로 0.1조원 증가한 데 그쳤음. 최근 세법개정을 통하여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하여 소득세를 정비하는 등 다른 세목의 세수가 증가하였으므로, 균형적인 세수기반 확충을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 매출액이 높은 기업의 조세감면은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증가하고 있는 않는 등 조세감면의 상위기업 집중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39)
소관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자	2017. 8. 9.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음.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종교계간의 협의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추가로 유예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헌법 제38조) 납세의무에 있어 성역(聖域)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종교인 과세제도의 시행은 별다른 이유없이 종교인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기존의 위헌적인 과세관행 및 불명확했던 법률의 내용을 입법을 통해 헌법에 합치되도록 시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미 헌법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시행하는 데 더 이상 협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 종교인 과세는 기존의 소득세법 체계를 뒤흔드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과세대상이 되고 있던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근로소득과 선택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특례까지 부여하고 있음. 게다가 법 자체에서 이미 2년의 유예기간까지 부여하였는바, 종교계간의 협의 및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세법개정안에 비하여 본 법률안에만 더 긴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 종교인 과세 문제는 무려 50년 전인 1968년부터 거론되어 왔음. 정치계와 종교계는 과세문제를 두고 50여년간 대화를 나누어 왔고, 그 결과물이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임. 이미 50여년 동안 논의하여 입법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4.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00026)
소관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5. 30.
대표발의	이학재 (자유한국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법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안 제2조제1호). “규제프리존”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2호).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규제프리존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시·도지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신 기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규제의 확인이 가능함(안 제12조).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3조).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음(안 제15조).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

	<p>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프리존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안 제32조).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자율주행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안 제35조). 규제프리존 내 친환경·청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37조). 규제프리존 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역내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39조). 규제프리존 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음(안 제41조).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43조). 규제프리존 내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6조). 규제프리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성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음(안 제52조제1항). 규제프리존 내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역내사업자는 농업보호구역에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4조). 규제프리존 내 농업회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5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기술연구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안 제57조제1항).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연간 180일 내에서 숙박영업을 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65조). 규제프리존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봄(안 제69조제1항). 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	---

	<p>(안 제73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안 제76조). ▪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안 제85조). ▪ 규제프리존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에 필요한 입주수요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 사무국을 둠(안 제91조). ▪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92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5조).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규제프리존법안은 “개별적·부분적 규제완화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한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규제철폐 입법 역사상 가장 과감한 시도”로서, 보건,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등 국민의 일상생활, 생명과 안전, 경제민주화, 교육균등 등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동 법안 검토보고서는, “국내 투자가 정체된 이유가 지역·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에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 규제 완화가 더딘 이유를 부처 이기주의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시각은 ‘규제는 원수이자 양당어리’라는 박근혜 정권의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임.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결·조정하기 위해 규제가 도입되었는데, 규제의 원인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규제만 폐지·완화하는 것은 규제공백에 따른 혼란을 초래함. 즉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의 과도함을 구분해야 함.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규제의 폐지·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을 뿐,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는데 있지 않음.
- 규제 즉, ‘규칙과 제도’는 사회와 시장을 운영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의 하나일 뿐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자체로 ‘악’이나 ‘양’과 같은 나쁜 가치로 평가될 수 없음.

- 시대가 바뀌어 사회가 변화하면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추어 더 이상의 효용이 없거나 사회적 합의가 소멸된 규제들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점에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이나 개선’이라는 과제는 모든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정업무이지 어느 시대에 갑자기 ‘손톱 밑 가시’, ‘암적 존재’, ‘단두대로 보내야’ 등 혁파되어야 할 정치적 선동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아님.
- 규제 공백의 대표적인 예가 역시 가슴기 살균제 참사임. 규제가 부존재한다면, 눈앞의 투자이익에 급급한 기업이 유해성 정보를 은폐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함. 나아가 규제가 있더라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메탄올 급성중독 실명사건임. 메탄올이 유독물질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당국은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함. 결국 의료·환경·정보인권 등 인권의 측면에서 특정 지역의 규제 완화로 인한 피해는 순식간에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매우 큼.
- 동 법안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나, 동 법안을 통해 이와 같은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자체가 의문스럽고, 정부 발표 자료만으로는 기대효과가 지극히 추상적일 뿐임.
- 동 법안은 네거티브방식, 즉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보는 규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안 제4조), 환경, 토지, 경제, 의료,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완화에 해당하고, 허용/불허의 범위가 불투명하여 자의적인 해석 및 임의적 행정재량이 지나치게 커지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 개발실패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없게 되는바,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 등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이는 곧 기업의 자유란 명목 아래 이를 제어해야 할 행정기능의 상실을 의미함. 최근 옥시의 가슴기살균제의 참사가 무분별하게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것임.
-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가 기재부에 설치되고 그 위원장은 기재부장관이 맡게 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따라 다른 법령이 배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음.(안 제19조) 이는 곧 기재부장관에게 다른 부처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부당하고, 기재부장관의 경제정책만으로 공공서비스가 민영화·영리화 될 수 있는 왜곡된 정책 결정 구조를 초래하게 됨.
-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는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 부여의 큰 권한을 갖게 되는데, 기재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장관 및 정무직 공무원 등이 위원이 되며, 기재부장관인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민간위원이 되는 구조로서, 근본적으로 기재부에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바, 공정성이 결여됨.(안 제91조)
- 동 법안은 ‘기업실증특례’라는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개별적으로 요구하고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점을 실증한 경우, 광범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기관은 기재부 장관인데(제13조), 기재부의 경제 논리만으로 일괄적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옥시 가슴기 살균제 참사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게다가 30일의 회신기간이 정해져 있어 충분한 심사도 보장하지 못함(제12조).
- 동 법안은 일반특례로서 특허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출입국관리법, 공정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의료기기법, 건축법, 전산업발전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세계 및 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제20조~제34조), 이는 지역전략산업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 것에 다름 아님.
-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산업과의 형

문제가 발생하며, 부당한 정경유착을 유발할 수 있음. 국공유재산의 민간매각 특해도 모자라 개발이익부담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저가로 매입한 민간업체에 대한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부동산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고, 지속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우려가 매우 높음.(제33조)

- 동 법안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오로지 지역산업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거의 지자체장의 결정만으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음. 동 법안은 산업적 목적(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위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제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동의 없는 정보수집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비식별화’임.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임. 이런 데이터의 변조를 통해 개인이 식별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임. 하지만 이미 대규모 유출이 이루어진 개인정보를 비식별화된 데이터와 결합하면 해당 정보의 주인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는 개인정보보호에 안전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음. (제36조, 제39조, 제40조)
- 동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의료영리화 문제임. 의료영리화의 문제로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 2014년 당시 박근혜 정권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추진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료법인의 영리 지회사 설립은 의료법 개정 대상이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허용하였고,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자유지업, 호텔업, 목욕장업 등의 부대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의료법령 개정에 대해 의료영리화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나, 동 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제43조),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음.
- 그 외 학교주변 호텔건립으로 인한 건전한 학습환경 훼손,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 및 계열사 제외 특혜, GMO의 졸속 검증으로 인한 국민안전성 위협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음.
- 결국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의료영리화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디지털정보위원회

5.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2000027)
소관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자	2016. 5. 30.
대표발의	이명수 (자유한국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함.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안 제14조 및 제15조) ▪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8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제19대 국회 기간에서 논란이 되었던 의료영리화법으로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기재부장관이 중심이 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개선의견까지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의료, 교육, 방송통신,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각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 장관에게 월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
- 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사실상 기재부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함.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은 근본적 이유는 대기업 중심경제구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중산층이 몰락하고,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계층이 자영업종으로 진출하여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양극화 심화와 가계소득 감소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민주화 정책과 재벌규제로 대기업 중심경제를 개혁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의 개선과 중소기업인 보호로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임.
- 동 기본법안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이미 제19대 국회에서 의료영리화의 논란을 이유로 폐기된 법안이므로, 다시 발의될 이유가 없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V.

1. 약칭 ‘공수처’ 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01461)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2001057)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04379)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8. 8. (2) 2016. 7. 21. (3) 2016. 12. 14. (4) 2017. 9
대표발의	(1)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2) 노회찬(정의당) (3) 양승조(더불어민주당) (4)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주요내용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014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둠(안 제3조)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0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안 제18조) 수사처에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둠(안 제20조)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20010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매년 국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토록 함(안 제23조) 수사처에서 퇴직한 자는 3년간 일정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2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함(안 제11조) 고소·고발인 및 수사의뢰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함(안 제22조)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043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 처장, 차장 및 특수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 조사처는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등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검사 등에 대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함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3급 공무원까지 확대. 고위공직자의 직에서 퇴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 고위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함(안 제2조)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범죄 외에도 공용서류등무효, 허위공문서작성, 강요, 공갈 범죄도 포함 그 외에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범죄도 포함(안 제2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추천위원회는 법조상론에서 각1명씩, 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토록 함. (안 제6조)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반복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관한 검찰의 편파·축소는 수사와 정치적 사건에 대한 표적·과잉수사 및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그리고 전관예우 등 특혜와 반칙에 근거한 법조비리로 인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음.
-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 체계의 검찰은 집권층을 위해 또는 검찰 조직 자체를 위해 권한을 왜곡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음. 검찰과 법원 등 법조 내부의 비리에 대한 자체 감찰 및 검찰에 의한 수사의 한계로 인해 법조, 특히 검찰 개혁 차원에서 독립적 기구의 설치가 요청됨.
- 규모면에서 양승조 의원은 처장, 차장, 3명이내의 특수검사, 30명 이내의 수사관으로 설치할 것을, 노회찬의원 안은 처장, 차장, 10인 이내의 특수검사, 45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으로, 박범계·이용주 의원은 처장, 차장, 20인 이내의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은 별도의 인원

두고 있지 않음.

- 국회의 인사청문에서 나아가 국회 동의까지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박범계·이용주 의원안 및 양승조 의원 안은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했고, 노회찬 의원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현행 헌법 및 법률상 국회의 동의 대상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정도라는 점, 추천위원회가 국회에 구성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장을 굳이 국회의 동의 대상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의 경우 처장이 특별검사의 직을 겸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 및 공소기관의 장인 처장은 특별검사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변호사의 자격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양승조 의원안은 이를 반영하고 있음.
- 수사권 발동 사유로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을 때'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은 고소·고발을 수사권 발동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 고소·고발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고,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수처 설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불기소심사위원회의 경우 오히려 공수처의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강화하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왜곡할 위험이 있음.
- 양승조 의원안의 경우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사항만을 정하고 있는 법안으로서 수사권 발동사유, 관할 등 주요 공수처의 작동과 관련한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의미로서의 의안으로만 기능할 것으로 보임.
- 한 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17.9월에 발표한 바가 있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규모는 종전안의 안에 비하여 상당히 큼. (처장, 차장,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공수처 검사, 50인 이상 70인 이내의 공수처수사관) 아울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3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4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면서 총 2인을 추천하되 이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한 것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한 것으로 보임.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법률안은 종전의 법안에 비해서 조직규모가 확대된 점 및 수사대상 범위가 커진 점, 재정신청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기존에 제출된 법률안들에 비하여 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본 권고안을 중심으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2.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6393)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5016)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05015)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3. 27. (2) 2017. 1. 9. (3) 2017. 1. 9.
대표발의	(1) 금태섭(더불어민주당) (2) 표창원(더불어민주당) (3)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63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부여하되, 직접 수사를 행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함(안 제195조) ▪ 경찰비리 등 경찰이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 복잡한 경제사건 등 단기간에 집중적인 역량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찰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권을 개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96조)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5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95조) ▪ 검사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2005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삭제함(안 제4조) ▪ 지방검찰청검사가 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수사중지를 명하고 그 임용권자에게 교체임용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4조 삭제)

2) 검토의견 : 입법 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2011년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개정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 개시·진행권이 명문화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은 여전히 독자적인 수사권에다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어 수사권과 기소권 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한 통제를 기대할 수 없음

-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에 종속된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닌 상호 감시와 견제의 관계로 재정립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함. 수사와 기소의 각 권한을 다른 기관에 맡겨 공권력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 목적임
- 현재 검찰과 경찰 모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중앙집중적이며 비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 현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이 권한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가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에 더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함
-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하게 되면 수사과정의 위법이나 부당함을 발견하고 통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경찰 비리사건 등을 제외하고 가급적 직접 수사는 지양되어야 함
- 또한 정확한 법률적용, 실체적 진실발견, 수사절차에서의 불법과 인권침해 방지 및 증거능력 있는 증거 확보 등을 위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확보는 필요하되, 검사의 수사지휘는 경찰의 수사결과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에 미진하여 추가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의제기나 인권침해 시비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 경우에도 직접 수사하는 것보다는 보강수사를 요구하고, 정당한 수사지휘에 불응하거나 위법한 수사를 한 경찰이나 비리경찰에 대해서는 검사가 징계해임·채임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강화되는 경찰의 권한에 맞게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함. 자치경찰제를 실시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이 갖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경찰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권리 확대)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2402)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0339)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9. 22. (2) 2016. 6. 20.
대표발의	(1) 금태섭(더불어민주당) (2)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2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03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의자 신문 시 의도적인 신문 방해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외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243조의2 제1항)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제34조의 점견·교통·수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3조의2제4항 및 제7항 신설)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비해 강력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음. 이로 인해 자백위주의 수사 관행 및 강압수사가 조장되고,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옴.
- 2005년 사법개혁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애초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과 같게 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위 방안은 경찰의 반발과 법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을 완화하여 즉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도 실질적 진정성립의 증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서재판의 억제와 구두변론주의의 활성화를 통한 공판중심적 형사재판의 정착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음.
- 그러므로 위 개정안과 같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인정 요건을 강화하여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피의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여 피의자를 조력할 수 있어야 함. 나아가 변호인의 참여는 수사과정에서의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요청됨.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아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법안개요

(의안번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589)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6. 10. 6.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악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악식명령은 검찰에서 거의 대부분 경찰송치기록만 검토하여 이를 청구하고 법관도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이를 발부하고 있어 악식절차에서 피고인은 법관의 면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함. 정식재판청구는 이러한 악식명령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의미를 가지나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되기 전에는 정식재판청구율은 1%대에 불과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음. 심지어 법원이 불이익변경을 무기로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를 취하도록 종용하는 폐단도 있었음.
- 정식재판청구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이래 정식재판청구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11.6%에 달하게 되자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고 있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본 개정안은 그러한 주장을 입법화한 것임.
- 그러나 위와 같은 폐지 주장은 상고법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이해관계보다는 업무경감과 간소한 사건처리라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치중한 것임.
- 정식재판청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형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재판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바, 악식절차에서는 검찰의 자료만이 법원에 제출되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 영업범의 경우 형의 확정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유형의 사건은 검찰이 처음부터 정식으로 기소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이를 막기 위하여 아예 정식재판청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자체를 폐지할 것은 아님.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5. '재정신청 확대' 관련 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44)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40)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1. 18. (2) 2017. 1. 18.
대표발의	(1) 박영선(더불어민주당) (2)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함(안 제260조제1항),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60조제2항).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이 재정신청의 기각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정담당변호사에게 보완 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2조제7항). 재정신청 기간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260조제3항)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담당변호사가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중극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 (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법제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불기소처분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 260조에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재정신청제도는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고 있으나 고발 사건의 경우 한정적인 사건유형(「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라는 입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아울러 현행법은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소유지의무를 해당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에게 맡기고 있어서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실질화 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해당 법률안은 재정신청의 전면확대 및 공소유지를 재정담당 변호사 제도 도입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안은 현행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입법촉구 대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아울러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현재 심리가 미진하여 그 인

용률이 대단히 낮은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할법원의 변경은 유의미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사법위원회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7630)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8435)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6. 27. (2) 2017. 8. 8.
대표발의	(1) 함진규 (자유한국당) (2)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현황 파악이나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예방접종 등 의료혜택이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영아매매, 불법적인 입양의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 비율이 2013년도에 98.7%인 점을 고려하여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출생지 관할 시, 읍, 면장)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부모를 1차적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바, 부모가 출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는 누락되거나 지연됨. 신고의무자인 부모가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46조 제4항), 검사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모가 기간 내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은 부재하여 여전히 입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음.

- 더불어 현행법은 혼인 외 자녀의 경우 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비혼 부는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실수상 비혼 부는 아이를 기아로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한 후 인지청구 등을 통해 아이의 부모 등록 하는 등의 해결을 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실제 출생 후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 되지 못한 아동이 유기되거나, 불법 입양(아동매매)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출생신고를 지연으로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체계에 편입되지 못하는 등의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4조 제2호는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는바(「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또한 입양특례법 시행으로 입양허가제가 도입된 만큼 입양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도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 부과는 반드시 필요함.
- 본 개정안은 아동의 출생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출생통보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임.
-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으로서(2016.6.9.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538), 생존, 발달 및 모든 아동을 위한 질적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함(CRC/C/GC/7/para.25). 출생신고는 아동을 불법매매·입양으로부터 보호하고, 연령을 확인할 수 있어 노동으로부터의 착취·군대로의 징집·사법체계에서의 특별한 보호가 적용될 수 있게 하며, 납치·유기 등으로 부모로부터 분리된 경우 가족결합을 가능하게 함.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대부분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아동의 출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동(강제) 출생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생아의 99.1%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병원의 출생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아이는 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서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본 개정안은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도(부모의 출생신고의무 유지)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에게 출생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자동(강제) 출생등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만 할 것임.
- 다만, 이때에도 병원 등 의료기관은 사적기구라는 한계가 있는 바, 공공기관과의 연계시스템을 보완하여 출생신고에 기반 공적장부를 작성할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및 아동인권위원회

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시설)

1) 법안개요

(의안번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6. 11. 10.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 수탁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소년보호시설'의 정의, 시설의 인적·물적 기준, 시설 운영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미인가 시설을 포함한 어떤 시설도 '소년보호시설'이 될 수 있는 상황 '소년중간처우시설'을 법정화하여 개방형 소규모 시설인 '대안보호가정'과 중대형 시설인 '소년보호지원시설'로 이원화하고, 소년중간처우시설의 성격, 인적·물적 기준, 운영기준 등을 명백히 규정하며, 소년보호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소년중간처우시설을 전담하여 설치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처분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하 '6호 처분'). 현재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전국에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법원이 지정한 7개 시설(이하 '6호 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위탁하는 6호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정안은 아동보호치료시설 대신 소년중간처우시설을 신설하고, 이를 법무부 소속 시설로 감독관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6호 처분'은 시설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소년원 수용처분과 유사하나,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시설 등에 위탁되어 지역사회에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소년원과 차이가 있음. 즉 '6호 처분'의 취지는 소년원과 같은 구금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적 처우의 관점에서 소년의 위탁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무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년원과 다른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마땅함
- 현재 6호 시설은 아동 복지 실현의 관점에서 민간 위탁 운영 방식에서 가능한 유연한 프로그램 변경 등 소년의 상태에 걸맞은 조치를 시기에 맞게 취할 수 있기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소년보호재판 담당 판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대상 아동의 처우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그러나 법무부에서 6호 시설을 전담하는 경우 기존 소년원 시설과 동일하게 감시·감독적 기능 및 이탈 방지적 수용이 강조되고, 소년보호판사의 후견인적 기능은 후퇴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무엇보다 소년원과 유사한 시설을 늘림으로써, 또한 그 관리와 감독을 법무부 산하에 둬서 아동복지시설과 법원의 소통을 차단하고, 법규와 매뉴얼에 따른 관료적 시스템으로 소년을 교화하겠다는 발상은 소년사법의 다이버전(Diversion)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시도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보호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요건을 재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시설 개선 및 아동의 보호와 치료라는 본 취지에 맞는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범소년)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006246)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7. 3. 17.
대표발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의 소년 보호사건은 죄를 범한 소년이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이하 '우범소년')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은 소년을 우범성만으로 예비범죄자로 간주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나아가 범죄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소년 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인 제4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조 제1항 제3호 삭제 및 제38조 제2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추구

3) 주요 검토내용

- 개정안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에서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여 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
- 우범소년은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솔, 또는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우려'가 있는 (보호처분 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함.
- 경찰서장은 우범소년에 해당되는 소년이 있을 경우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하고,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음[「소년법」(이하 '소년법') 제4조].
- 소년법은 사법법(司法法)으로 보호처분을 부과하며, 특별형사사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지배이념인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됨.¹⁾ 우범소년에 관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가 정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높

1) ,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 233쪽, 가족법연구 제30권 제2호(2016. 7.)참조

고, 그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많음. 그럼에도 소년부로 통고 내지 송치된 우범소년은 최대 2년 장기 소년원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소년법 제32조).

- 우범소년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고 우범소년의 성격에 비추어 형사적 재재보다는 복지적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에서도 입법수단이 적절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 1. 2. 현행 「소년법」(이하 ‘소년법’) 상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경우 가출이 가정폭력, 학대 등의 가족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출 그 자체를 ‘반사회적 행동’으로 낙인찍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범죄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년법 제1호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위 조항 제3호 우범소년 규정 전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권고하였음.
- 현행 우범소년 규정은 규정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음. 1990. 12. 14.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유엔지침」(리야드 가이드라인)은 소년에 대하여 ‘일탈’(deviant), ‘비행’(delinquent), ‘우범’(pre-delinquent)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결국 범죄로 진행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며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 범죄시하고 형벌화하는 것을 삼갈 것을 기본원칙의 하나로 채택하였으며,²⁾ 그러면서 성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소년이라고 하여 낙인화하고 범죄시하는 입법이 없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³⁾ 200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제10호(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서도 각국이 이러한 소위 ‘지위비행(status offences)’ 규정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⁴⁾
-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천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실천하는 입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전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9.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64) (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68)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9. 9. (2) 2017. 9. 7.
대표발의	장재원 (자유한국당)

¹⁾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구현”, 337쪽, 소년보호연구 제24호(2014. 2.) 참조; 같은 논문 각 주8) 및9) 재인용; 한국소년법학회편, 소년법연구, 28쪽, 세창출판사(2006), 조준현, “소년사법의 이념과 원리에 관한 소고”, 287쪽, 소년보호연구 창간호(1999)
²⁾ A/RES/45/112 (1990. 12. 14.), para.5, 김지혜, “가출의 비범죄화 - 소년법상 가출규정과 가정밖 청소년의 인권-”, 42쪽, 소년보호연구 제23호(2013. 10.) 참조
³⁾ A/RES/45/112 (1990. 12. 14.), para 56, 위 논문 42쪽 참조
⁴⁾ CRC/C/GC/10 (2007. 4. 24.), para.8, 위 논문, 42쪽 참조

주요내용	<p>(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6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두고 있으나 14세에 이르지 않은 자들도 방송이나 인터넷 등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워졌고, 형사미성년자의 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형사미성년자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 <p>(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6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종래 14세에서 12세로 조정함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종래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4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하고,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0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입법임.
- 위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나 인지능력이 빨라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능력 하향조정이 필요함을 근거로 제시함.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이 북셈부르크 아동(18세)보다 성숙하고 싱가포르 아동(7세)과 스코틀랜드 아동(8세)보다 발달능력이 느리다고 확인할 수 없듯이, 위 형법과 소년법 규정은 위법행위를 한 아동에 대한 사회공공의 책임을 인식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른 형사정책적 결단임. 즉, 자유의 제재와 응보의 목적이 아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와 복지적 처우에 그 목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도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을 정하고 있는 것은 유소(幼少)한 자의 정신의 발육·성숙과정은 정신장애의 존부(存否)나 정도와는 달라서 정상적인 과정이며, 나아가 개인차가 심하므로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의 존부·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그 감수성이 강하고 상처받기 쉬운 정신상태에 있고 반사회성도 고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당한 정도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가미한 규정”임을 확인한 바 있음(2003. 9. 25. 헌재 2002헌마533 결정).
- 베이징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은 정서적, 정신적, 지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형사책임 최저연령⁵⁾의 시작을 너무 낮

은 연령대에 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제4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가능한 12세 이상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최저연령을 더 높여갈 것을 당사국에 장려한 바 있음(CRC/C/GC/10/para.32).

-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제3-4차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에서도 “대한민국 내 청소년 비행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재범률 등 청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점, 비행아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보다 성인 구금시설에 비행아동을 구금하는 등, 아동 범죄자를 사회가 효과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 대신 징계조치를 늘리는 식으로만 청소년 범죄 대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한 바 있음. 지속되는 범죄 증가율과 범죄의 잔혹성은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며, 오히려 소년사범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할 것임.
- 즉, 현재 필요한 논의 내용은 현행 소년사법 체계가 범죄를 행한 아동의 연령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통해 책임을 인식하고 반성할 수 있게 지원하며,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의 회복과정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임.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의 대상연령을 축소함으로써 엄벌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적극 반대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83)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7. 7. 31.
대표발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의 피고인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및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형량 완화 특칙을 정하고 있음(제4조제1항). 이는 「소년법」 상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정신적·사회적 미성숙과 추후 교화·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임. ▪ 그러나 가벌성이 큰 강력범죄에까지 형량 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배치되고, 강력범죄 엄단 등 입법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강력범죄를 행한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곧바로 보복 또는 재범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이에 관한 사회적 불안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

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남치 살인 사건’의 범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표창원 의원 등 29인이 국민의 법감정,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그러나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석방 가능성이 없는 중신형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 제3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 협약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위하여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소년범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은 개별 사례에서 소년범의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요소이지, 소년범 일반에 대한 엄벌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가 되어서는 안 됨.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음. 또한 개정안이 소년범에게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형 폐지라는 국제인권법의 정신과 최근 동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 또한 소년범에 대한 엄벌주의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억제,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친 후 보복이나 재범 우려가 있다는 주장 또한 통계적, 과학적 근거가 없음. 설령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소년사법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소년범을 무제한 또는 장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됨.
- 이와 같이 개정안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되는 법안이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임.
- 이 사건 이후에도 부산, 강릉에서 청소년들이 또래 피해자를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하태경, 이석현, 김도읍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엄벌주의를 강화하려는 소년법, 형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임(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소년법의 적용 대상 연령 하향, 소년범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 확대 등). 이러한 일련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모두 입법을 적극 반대하며, 향후 위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5) 형사책임 최저연령(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은 법을 저촉한 사람이 사법절차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소년법상 10세로 정하고 있다고 할 것임.

1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61)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7. 6. 29.
대표발의	금태성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아동의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주아동의 안전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2제1항). 부득이하게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교육·급식 및 의료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보호하지 않는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연계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52조의2제3항 및 제4항).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을 6개월로 하되, 보호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및 제2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거나 강제퇴거 명령 집행을 위한 경우 '외국인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주아동 구금을 행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 보호기간에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피보호자가 자신의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장기구금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구금 사실 그 자체로 아동의 신체, 정신적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12년 아동권리위원회와 2015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자유권 규약 관련) 이주아동의 구금 금지 및 대안적 조치를 권고함. 국제법적으로는 이미 이주아동 구금의 위법성을 지적한 다양한 연성법을 통해 아동의 구금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함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음. 본 법안은 이러한 국제 규범을 국내법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음.
- 다만, 구금 해제 시 그 구금의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이 법원 또는 판사의 영장 발부 및 재판 없이 법무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움. 구금의 대안 제시를 통해 실효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며, 구금의 연장에 대한 절차적 보호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부분은 이후 추가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이주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되는 등으로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부모와 격리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의해 이주아동이 적절한 빈도로 부모를 면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12. 약칭 '스토킹 처벌법'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스톱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0102) (2) 스톱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2002063) (3) 스톱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2002537) (4)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2002641) (5) 스톱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08108)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6. 3. (2) 2016. 9. 2. (3) 2016. 9. 30. (4) 2016. 10. 13. (5) 2017. 7. 2.
대표발의	(1)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2) 김정훈 (자유한국당) (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4) 김상화 (국민의당) (5) 이동섭 (국민의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지 (5) 법률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 미행,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등 특정 행위를 '스토킹(범죄)' 또는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는 법률 제정안임. 기본범죄의 법정형은 (5)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 (2)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3), (4)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 범죄를 신고받은 즉시 경찰관의 응급조치(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등), 검사나 경찰서장의 신변안전조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규정함. (1), (2), (3), (4)의 경우, 피해자 지원시설을, (1), (2), (3)의 경우 전담조사제, 전담재판부를 규정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로 규정된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장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하여 하는 행위)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스톱킹범죄의 불법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법정형 또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만 규정하고 있어 스톱킹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할 수 없음.
- 한국여성의전화의 2013년 2016년 상담 결과에 따르면 스톱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이 69%,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8%, 직장 관계자 7%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이 경우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숨거나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스토킹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전담조사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스토킹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스토킹 관련 법안이 8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임기만으로 폐기되었고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 의한 피해는 더 증대되는 양상이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한 입법이 요구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94)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43)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43)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38)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74)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34)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97)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12. 15. (2) 2017. 1. 2. (3) 2017. 3. 8. (4) 2017. 7. 11. (5) 2017. 9. 7. (6) 2017. 9. 13. (7) 2017. 9. 14.
대표발의	(1) 김상화 (국민의당) (2) 김상화 (국민의당) (3) 이주영 (자유한국당) (4)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5)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6) 박대출 (자유한국당) (7)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1)과 (5)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불법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확산의 위험성 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

	<p>행법을 개정하여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임. 개정안 (1)은 이와 함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1)은 처벌대상이 되는 신체 촬영 범위를 넓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자 하며 개정안 (7) 역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불법 촬영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안 (2)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 하여도 삭제 이미지의 복원이 가능하므로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 (3)과 (6)은 다른 사람의 신체가 나타난 사진이나 영상을 재촬영하거나 다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편집 또는 유포하여 재생산한 경우에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함. ▪ 개정안 (4)는 반복 범행 가능성이 높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에 상습범 가중 규정을 신설하려는 법안임.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추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상대방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단순 소지하는 행위와 유포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불균형이 있으며 또한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유포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1)과 (5)는 입법이 꼭 필요함.
- 법원이 그 동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적용 기준을 엄격하고, 좁게,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 (1)과 (7)도 입법 필요성이 높음.
- 기술 발달에 따라 삭제된 이미지 복원이 가능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재촬영하여도 해상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으므로 범행 도구인 카메라 등을 몰수하는 (2)와 사진, 영상을 재촬영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3)과 (6)도 입법 필요성이 큼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상습범 규정을 두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4)도 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07624)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09631)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6. 27. (2) 2017. 9. 27.
대표발의	(1) 이재정(더불어민주당) (2)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행위태양)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로의 표지 또는 그 밖의 부속물을 손괴,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 위 행위를 하여 ‘타인의 신체, 생명 또는 상당한 가치의 재물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호법익을 구체화하였음 ▪ 형량을 기존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징역형을 하향 조정함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행위태양)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교통로의 표지, 그 밖의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 위 행위를 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 명확히 하였음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위가 처벌될 여지가 있음.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은 필연적으로 처벌의 자의성을 낳게 되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집회·시위는 도로를 행진하는 것을 그 전형적 행위태양으로 삼고 있음. 그런데 일반교통방해죄의 포괄적 구성요건이 악용되어 도로를 행진하는 방식의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된 결과 평화적 집회에 참여한 사람도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 실제, 집회 관련 형사사범 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죄 위반 사범이 훨씬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집시법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거나 가벼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영장없는 체포(현행법 체포)를 하거나, 높은 형량으로 구형 및 처벌을 하

어 왔음.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가능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임

- 1989년 법무부 형법개정 소위원회에서도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음.
- 이재정·박주민 의원안은 구성요건(행위태양)에서 불명확한 부분(‘기타 방법’)은 삭제함과 동시에 일반교통방해죄 원래의 취지에 맞는 요건과 법익은 상세하게 규정하였음.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현행 일반교통방해죄의 죄형법정주의 위배, 집회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면서도 일반교통방해죄의 본래 취지에 맞는 규범성은 제고될 것으로 보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

1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255)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6. 11. 02.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562조부터 제564조까지).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며,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611조제5항 및 제624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이 법원으로 하여금 법정 면책불허사유를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파산채권자 등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직권으로 면책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게 되어 법원에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적 채권채무관계의 정리를 위하여 진행되는 면책절차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여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신속히 하려는 취지.
-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제610조제1항), 변제계획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야 하고(제611조제1항)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제611조제4항),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제611조제5항). 개정

안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여, 개인 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1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91)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6. 08. 24.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안 제2조제1항). 이자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받도록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업 및 대부업도 이 법에 따른 이자 제한을 받게 됨(안 제7조).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안 제8조제3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임. 최고이자율 인하는 서민의 이자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서 현재 시중의 이자율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과 외국의 입법례⁷⁾ 등을 반영하여,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대부업 및 「대부업 등의 등

6) ,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일본(연15% 연20%), 미국(각 주 평균 20%), 독일(약 20%) 등 대부분 20%를 최대이자율로 정하고 있음.

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⁸⁾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금전대차 또는 소비대차약정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동 법의 제정취지에 적절하고 모든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 규제의 편의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채무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1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3255)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6. 11. 03.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자가 채권추심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8조의2). 현행법은 이른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사실상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채권추심자가 제한없이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채권자를 가리지 않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의2). 채무자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행위 금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해치는” 부분 중 “반복적”과 “심하게”를 삭제함(안 제9조 및 제12조제4호).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완함(안 제12조제4호).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 제8조의2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대부업자라 함)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

8)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한) 또는 범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금지하는(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채무자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¹⁰⁾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첫째,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에게 방문 등을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현행 “대부업자” 외에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채권추심업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으로 확대하여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둘째, 채무자의 대리인 범위를 현행 “변호사·범무법인·범무법인(유한) 또는 범무조합” 외에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¹¹⁾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¹²⁾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채무상당,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임. 개정안과 같이 채무자대리인제도에서 채권추심자와 채무자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하고, 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서민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자력이 부족하여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

○ 현행법 제9조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③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¹³⁾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첫째,

- 9) 채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교섭력을 회복하기 위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의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임. 우리나라는 특히 소송 외적인 채권추심이 극심한데 잦은 전화연락, 가정과 직장으로 방문하여 추심하는 등 채무자를 상당히 괴롭게 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였으나 2014. 1. 14.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에서 도입되어 2014. 7. 15부터 시행됨.(대한변호사협회 의견)
-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 1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1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1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① 방문, ② 전화하는 등”에서 ‘반복적으로’를 삭제하여 “야간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① 방문, ② 전화하는 등”을 금지하고, 둘째,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서 ‘심하게’를 삭제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채권추심 관련 금지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이는 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로부터 채권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보장하려고 현행법의 금지요건을 완화하여 규제되는 추심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반복적으로’와 ‘심하게’를 삭제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므로 현행법에 비하여 제한의 폭을 확대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현행법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¹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개정안은, 첫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둘째, 현행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에서 ‘반복적으로’를 삭제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06210) ¹⁵⁾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7. 3. 16.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함 ▪ 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축소하고, 자동갱신 시 임대차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함 ▪ 임차인이 위 기간 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3기의 차임액을 연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 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③ 제12조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5)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관련 법률안으로는 위 법률안 외에도 윤영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p>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도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된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임대차 시작 월부터 종료 직전 월까지의 통계청 발표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연 5%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증액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하지 못하도록 함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제4조), 계약의 목시적 갱신만 인정할 뿐(제6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따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최장 2년 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다시 거주할 주택을 찾아 매매어야 하는 주거 불안정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음
- 또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대법원 200.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재계약 시 임대인이 부당하게 차임을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위 법률안은 이러한 현행 법률의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우선 최단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전체 임대차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현행보다 좀 더 장기간의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음. 또한 차임, 보증금의 증액에 관해서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상한을 정하고, 증액이 있는 후 2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도록 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동장치도 마련함
- 위 법률안대로 개정 시, 임대료 급등세 완화 및 임대차 장기화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01865),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278),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016),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056),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188),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4662),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148) 등이 있음

1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00165) ¹⁶⁾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6. 6. 9.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적용범위를 상가건물의 임대차 전체로 확대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예외적으로 상가건물의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전비용 보상청구권 부여하도록 함 ■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및 구분소유의 형태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임대차로 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른바 환산보증금을 통하여 위 보증금액의 범위를 너무 좁게 규정하고 있어 정작 임대차분쟁이 심한 주요 도심과 부도심 지역의 상가 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년의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투자비용 회수, 거래처 형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2015. 5. 13.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도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 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형평성에 논란이 있음
- 위 법률안은, 우선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적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가 동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도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현행(5년)보다 장기간의 임대차를 보장함. 나아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및 구분소유의 형태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법에서 보호받는 권리금 범위를 확대함
- 위 법률안대로 개정 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하여 보증금과 월차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6) 위 법률안 외에도, ① 임대차기간 10년 연장에 관해서는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6225), 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059), ② 법 적용범위 확대(환산보증금 폐지 포함)에 관해서는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상동),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045),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728), 광상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488), ③ 권리금보호 회수기간·적용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김현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8765),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상동),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4640),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상동), 광상도의원 대표발의(상동), 백재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0047) 등의 법률안이 있음

- 다만 관리금과 관련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금회수 기회 보장을 위하여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규정된 회수기간을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늘리거나(위 권한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또는 임대차기간 중이면 언제든지 관리금 회수가 가능하게 하는 등(위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 추가 입법도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405)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234)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2. 2. (2) 2016. 6. 14.
대표발의	(1) 최명길 (국민의당) (2)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해야함 ▪ 위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 함 ▪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후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관리단집회에 제출하여야 함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등의 청구·수령·관리·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규약을 정할 때 표준규약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규약의 제정·개정, 관리인 선임·변경, 관리위원회 설치·변경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23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 ▪ 구분소유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집합건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인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합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며,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함 ▪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며,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수 이상의 구분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위원회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 ▪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추구

3) 주요 검토내용

- 그동안 주택법, 공동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대형 상가건물 등 대형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위 법률안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하여 관리인의 관리비 집행방법, 회계장부 작성 및 외부회계감사 의무 등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과 유사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규율 및 후견적 행정개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또한 장기수선계획과 이를 실행한 수단으로서 총당금 적립 등 대형 집합건물의 장기보존대책에 관한 근거도 마련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91)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2016. 9. 2.
대표발의	노회찬 (정의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책임을 지도록 함 ▪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권으로 변경하되, 주식 6개월

17) 동일한 법률안으로는 김병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01364)이 있음

	<p>보유 요건을 추가하여 남소를 방지하고, 과반수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역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회사(피지배회사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사실상 피지배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의 주주 역시 그 지배회사의 영향력을 받는 “피지배회사”에 대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함. ▪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가지도록 하며, 회계장부열람권의 범위를 피지배회사로 확대함. ▪ 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400조 제2항을 삭제하고, 법원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함.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며,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함.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추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재 판례에 따르면, 대표소송의 원고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이사가 경영판단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증거는 대개 회사 내부에 존재하므로, 현재로서는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 아내기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이사의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한편으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상 입증책임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함.
- 현재의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에 비추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함, 남소우려에 대한 방지책으로 ‘6개월 이상 보유요건’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인(안 402조), ② 현행법상으로는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는 주주가 아닌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누구보다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점에서 긍정적인.
- 다중대표소송의 도입과 관련하여, ① 단순 모자관계 회사(지분을 50% 초과)에 그치지 않고 지분률을 30%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 규정한 것, ②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부여한 것은 긍정적인.
-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제402조 제2항을

- 삭제함으로써 책임경역의 이념을 확인하고, 대신 법원이 감경할 여지를 둔 것은 손해분담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함.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1인을 사외이사의 선임하는 것은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준법감시의 점에서 긍정적인.
 - 그 외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이사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의 도입, 전자투표 등의 실시 의무화 규정 역시 이사회를 견제하고 주주총회의 실질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2. 징벌적 배상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징벌적 배상법안 (2000283) (2)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 (2003400) (3)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2006302)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6. 16. (2) 2016. 11. 8. (3) 2017. 3. 21.
대표발의	(1) 박영선(더불어민주당) (1) 금태섭(더불어민주당) (3)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p>*공동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 <p>(1) 징벌적 배상법안(200028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 징벌적 배상소송은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소와 별도로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1항) ▪ 징벌적 배상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3조) ▪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불법행위의 성질 및 발생 빈도, 불법행위가 피해자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참작하도록 함(안 제17조) <p>(2)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2003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 대기업 및 이에 준하는 규모의 외국법인이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준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들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8조). ▪ 징벌적 배상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함(안 제11조제2항). ▪ 원활한 증거조사 및 증거발견의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직권증거조사를 인정하고, 문서제출명령의 요건을 완화하며, 증거보전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p>(3)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20063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는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그 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함(안 제4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자에게 제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5조).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우리사회에서는 다중대한 악의적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 및 제재할 민사적 수단이 없었음. 위자료 증액이나 과실상계 배제와 같은 수단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전통적인 전보배상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억지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음.
-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개정안들은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2~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징벌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배수배상과 같은 한도를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함.
- 실손해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보다 몇 배의 징벌배상을 명하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있는 재발방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향후 재판실무가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징벌배상액 산정에 관한 기준이 정립될 것임.
- 한편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것은 피해자의 관할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VI.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99)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2017. 2. 20.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 그런데 가족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미성년자에게도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단서).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UN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제24조는 모든 아동에게 최상의 건강 수준을 누릴 권리를, 제27조는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제27조는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률은 지역가입자인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납부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 현행 법률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이른바 ‘사회연대의 원리’에 기초하여,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연대의 원리는 협약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까지 관철되는 원리라 볼 수 없음
- 일각에서는 부모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및 재산을 미성년 자녀 명의로 바꾸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본 법률안에 반대하고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위험은 입법자가 별도의 제재방안을 강구하여 방지해야하는 것으로, 현행 법률과 같이 미성년자

에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역가입자인 미성년자의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전면적으로 면제하는 본 법률안에 찬성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69)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50)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59)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7. 8. (2) 2017. 1. 31. (3) 2017. 7. 18.
대표발의	(1) 기동민(더불어민주당) (2) 남인순(더불어민주당) (3)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007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요건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함. (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05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080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신규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건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휴지 또는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로부터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더디다. 즉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현재 전체 어린이집 41,084개소의 6.9%(2,859개소)에 불과하며, 이용 아동 수 역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1,451,215명의 12.1%인 175,929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데, 예산 등의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1) 내지 (3) 법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어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836)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84)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8. 26. (2) 2017. 2. 24.
대표발의	(1) 전해숙 (더불어민주당) (2) 윤소하 (정의당)
주요내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01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 정의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2조제5호 삭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3제2항).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의 정보 조사 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의2제1항·제2항).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후 비용징수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46조제1항 삭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057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함(안 제2조제5호 삭제 및 제3조제2항). 기본재산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등과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소득의 범위, 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6조의3부터 제6조의7까지 신설). 주소지가 없는 수급신청자의 경우 수급실시를 희망하는 보장기관에서 임시 주소지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19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3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급여의 신청 이후 결정은 최저생계비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

	<p>최대 30일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6조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 종료 기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행정상의 오류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과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소급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29조의2 신설).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는 것으로 여겨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가 빈곤층의 인가다운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015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신청자 3명 중 2명이 넘는 67.59%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음.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가구는 4명 중 1명보다 적은 24.38%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더 절약해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답하였음.
- 현행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한다는 것을 소명해야 수급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권을 위해 가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음.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고 하여 수급권을 가진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간주 부양비를 급여에서 삭감하고 있어서 더 많은 급여를 위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연락을 끊어야 하는 비인도적 결과를 낳고 있음.
-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적은 부양의무자가 더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다보니 정착 자신도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는 가나의 대물림을 초래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등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음.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01836)과 함께 2016. 8. 26.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001843)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위 주거급여법도 입법적극촉구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444)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800)
소관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6. 16. (2) 2016. 12. 29.
대표발의	(1)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2) 윤소하 (정의당)
주요내용	<p>(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44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 함(안 제2조제1호, 제1호의2 신설). ▪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와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8호 신설).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3조의2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신청인의 욕구 및 선택을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및 신청인이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함(안 제7조제2항 삭제). ▪ 지자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 등 조사 및 심사하는 것을 조사로만 한정하고, 심사를 삭제함(안 제7조제3항 및 제6항). ▪ 지자체장은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7조제7항). ▪ 활동지원등급을 삭제 또는 활동지원급여량으로 변경함(안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 통지서에는 인정조사표 항목별 점수가 개별적으로 기재된 인정점수, 이의신청의 기한 및 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함

	<p>(제1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 수급자격 인정 범위의 단서를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 등이 신청 등을 할 수 없거나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이 되어 보호가 곤란하거나 장애인이 1인가구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하여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 천재지변과 사고 등의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 등의 생활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한 경우 또는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에 대해서 활동지원과 추가급여를 통해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 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기본급여와 추가급여, 방문간호서비스 발급비용 등 본인 부담액 총액은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로 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고, 명시함(안 제33조의2 신설). <p>(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8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생활환경,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3년 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조의4).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범위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의 산정 시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했던 것을 신청인만으로 한정하여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33조). ▪ 활동지원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별 활동지원한도를 실시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안 제12조). ▪ 활동지원서비스에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월 한도액에 1인가구, 가구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등에는 추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함(안 제18조).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법은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 한도 산정 시 장애인 본인 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고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1. 29.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급여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 위 법률안들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입법을 적극 촉구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VII.

1.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673) ¹⁸⁾
소관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5.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개선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위탁기업의 이익 중 합의한 목표를 초과한 이익을 사전에 합의한 배분규칙에 따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부가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초과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초과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업종·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대기업 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하고, 대기업 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제8조 1항 전단에서 ‘수탁기업이 원가 절감 등 수탁·위탁 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단체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제적 현실에다가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상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행하는 상황에서 성과공유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또한 동반성장위원회에서의 적합업종 합의

18) 것으로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000077)도 있음

도출은 자율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적합 업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상생협력 모델의 법제화가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31)
소관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일자	2017. 8. 2.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4년말 이후 자본감소 발생 및 부채비율이 급증한 뒤 최근에는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영업손실과 순손익 적자폭이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투자사업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2016년도 결산 결과 완전자본 잠식에 이르러 2018년도부터 필요한 자금의 조달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동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조원이나, 이미 1조 9,883억원이 납입 완료되어 자본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출자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한국광물자원공사는 1967년 광산의 개발 및 국내외 자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100% 출자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설립 당시 법정자본금은 10억 원이었으나 몇 차례 증액 이후 2008년부터 지금까지 2조원으로 증액된 상태임.
- 한편, 동 공사는 불투명한 사업 운영 및 진실 은폐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 관하여 1,514억 원,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 관하여 2,072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2009년부터 무리하게 신규 사업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해외 자원투자 사업의 누적 적자가 7조원에 달하고 있음.
- 동 공사의 투명한 사업관리와 체계적인 투자 금액 회수를 위한 것이 아닌, 단순 자본금 증액은 국민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률안에 불과하여 당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VIII.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5598)
소관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일자	2017. 2. 13.
대표발의	김상화 (국민의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구분하면서도 성매매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현행법상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별도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하게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입법한 의도는 성매매청소년을 규율 내지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청소년성보호법의 시초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0. 7. 1., 법률 제6261호,

- 2000. 2. 3. 제정)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음. 헌법재판소도 규율의 주안점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구매자’에게 옮겨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고 판시하였음(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와 제34조는 ‘성적학대를 포함한 성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당사국의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39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등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를 근절하고 아동을 보호하고자 유엔에서 채택한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이미 2002. 1. 18. 조약 제1688호로 발효되었음.
- 현행법상 성매수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14세 이상)이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는 순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차로 회부될 경우, 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으로 명명되고,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됨. 10가지의 처분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한 치료와 재활, 지원은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7. 25. 국회의장에게 본 개정안에 대하여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여 이들이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전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였음. 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보호처분에 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고(소년법 제53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규율을 위한 보호소년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처분결정이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되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이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 등 보호처분이 사실상 ‘처벌’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응답이 무려 41.5%, 법원에서 받은 보호처분을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실질적으로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 규정으로 인해 피해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하는 성구매자와 알선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여 성매매피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수사기관과 법원의 경우, 겉으로는 제3자에 의한 알선이나 유인, 권유를 찾기 어려울 때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음.²⁰⁾ 특히 심대 성매매의 대다수는 성매매와 성폭력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성

19)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95~105쪽, 국가인권위원회(2016. 11.)
 20) 조진경,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쟁점 및 입법과제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4쪽, 국회입법조사처(2017. 1. 24.)

자체에 대한 동의를 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거부의 의사표시나 반항을 분명히 하지 못하여,²¹⁾ 성폭력 내지 성매수범죄의 피해자로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보호처분의 내용이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고,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사업이 분절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정책), 권익지원과(지원시설 운영 등 관리), 아동·청소년성보호과(성보호에 관한 사항), 폭력예방교육과(치료재활교육), 청소년자립지원과·청소년보호환경과·학교밖청소년지원과(위기청소년지원정책) 등이 연관되어 있으나 성장 단계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십대 성매매의 맥락을 고려한 지원체계는 찾아보기 어려움. 성매수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은 가정 밖, 학교 밖의 상황 및 빈곤에 처해 있는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볼 때,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의견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21) , “청소년 성매매의 법률적 규제와 문제점”, 66쪽, 젠더법학 제3권 제1호(2011. 3.)

IX.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790)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24.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삭제).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 상한을 연간 27.9% 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1400조를 넘어선 자금도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들의 자금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악랄적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삭제).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117)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안일자	2017. 9. 6.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자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34조 제2항에서 공급업자가 구입 강제 행위(제6조)를 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제7조)를 한 경우에만 공급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 그러나 대리점 거래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리점주가 공급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공급업자가 거래 정지, 물량 축소, 보복 출점 등과 같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구제 및 법 위반 억지력이 미약하다는 점임. 대리점주 입장에서 보복조치는 경쟁력 약화로 인한 시장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감질 행위에 해당함.
- 위 법률안은 보복조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위 법률안대로 개정 시,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 조치에 대한 법 위반 억지력 증가와 대리점주들이 보복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속고발권)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044)22)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안일자	2016. 10. 28.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p>다)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조사한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회부하도록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지사가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체로 제한되어 있는데, “시·도”에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구성도 현행은 공정거래조정원에 국한되어 있지만,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도 가능하도록 함.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민법」 제170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분쟁당사자 간에 작성된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권익을 할 수 있도록 함.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하고 있음. 하도급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원만한 조정을 유도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하도급거래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 권한 중 조사권, 고발요청권, 조정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개방한다면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감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분야 중 우선적으로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독권한의 일부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나누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도급 거래에서도 권한 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22) 권한 위임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문재인 정권의 주요 공약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논란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감사원·조달청 등의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최윤열 의원 등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제대로 규제하고자 2016. 6. 28.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안 제32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항 삭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0531)을 발의함. 전속고발권 폐지는 실효적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측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므로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할 문제임.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편취방지)

1) 법안개요

(의안번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6435)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안일자	2017. 3. 28.
대표발의	김기선 (자유한국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교섭 단계에서의 기술편취 방지(안 제12조의3 제2항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입증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제공의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서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 하지만 당해 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된 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거래 이전 일방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기업 및 원사업자 측이 수급사업자 및 중소기업과 교섭과정에서 기술 설명을 구실로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교섭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 기술 자료의 요구를 금지토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이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규정삭제)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07764)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안일자	2017. 7. 4.
대표발의	윤상직 (자유한국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이라는 경제적 제재 수단 외에 형사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므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 삭제(안 제30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 사회의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지급해야 할 대금을 제때 치르지 않거나, 수급인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문제가 만연하고 있음.
- 하도급법상의 벌칙 규정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벌칙 규정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
- 과징금이라는 경제적 제재 수단만으로 현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힘들어 보이므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지 의견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²³⁾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898)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안일자	2016. 10. 25.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신고하도록 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가맹점사업자단체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맹사업 거래를 일시중지할 수 있음. 해지절차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 직접적인 벌칙규정을 신설(안 제41조제1항).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23)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의안번호 2008382), 판촉행사시 가맹사업자의 동의를 필요(의안번호 2008216, 2004090), 보복조치 금지(의안번호 2008040), 가맹본부에 가맹사업자단체와 협의 개시의무를 부과(의안번호 2007753), 가맹점 출점 거리 제한(의안번호 2007190), 초과이익공유제(의안번호 2006890) 등 관련 개정안이 많음

- 영업지역의 최소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영업지역이 10m, 50m인 가맹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며,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또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모집광고비용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현실임.
- 일부 가맹본부가 법에서 보장하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여 탈법 수단으로 활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 규정은 가맹계약 해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지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해지권 행사에 실질적 한계가 있음.
- 또한,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직접적인 벌칙규정이 없어 가맹본부가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불공정행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이 구성되고 있음. 그러나 세부규정의 미비로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의요청권이 사문화되며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가맹사업법은 위와 같은 문제들과 함께 계속되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분쟁발생 시 실력행사 등으로 갈등이 극대화되어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가맹점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안마련을 위해 개정안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X.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법률안(2004364)
소관상임위	정보위원회
제안일자	2016. 12. 14.
대표발의	윤종오 (민중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의 내용은 현재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을 폐지한다는 것임. ▪ 제안이유는 ① 재정 논의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②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 아니라,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과 같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추적의 원리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 원리를 무시하는 위헌적, 인권침해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④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있으나,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인권보호관이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임. ▪ 현행 테러방지법을 폐지하여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준수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추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 테러방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각종의 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에 관하여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그 범주가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함. 이는 집행기관이 ‘테러’ 또는 ‘테러위험인물’을 판단할 때 어떠한 규범적 기준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법집행의 위험성이 높음.
- 현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있음.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기만 하면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조사·수집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와 심각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함.
- 테러방지법 제8조 등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현행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대테러대책기구 등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서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역할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음.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맡고(시행령 제12조), ‘공황·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

장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며(시행령 제 13조), 테러관련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설치·운영 권한 및 '대테러합동 조사팀'의 편성·운영권한 또한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시행령 제20조). 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들이 연일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는 시민감시와 불법사찰 등의 인권침해의 개연성을 높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테러방지법은 하루 빨리 전부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모임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 2016헌마442호로 테러방지법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심리 중에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2. 국가사이버안보법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국가사이버안보법안(2004955)
소관상임위	정보위원회
제안일자	2017. 1. 3.
대표발의	정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안보 추진기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2)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안 제6조 및 제7조) ▪ 사이버안보를 위한 예방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0조) 2) 사이버안보 실태의 평가(안 제11조) 3) 사이버위협정보의 공유(안 제12조) ▪ 사이버안보를 위한 대응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이버공격의 탐지 등(안 제14조) 2)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통보 및 조사(안 제15조) 3) 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및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안 제16조 및 제17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3) 주요 검토내용

- 본 법률안은 이른바 사이버안보²⁴⁾영역의 관리 및 감시 등의 컨트롤다워 역할을 국가정보원

24) 제2조 제4호는 '사이버안보'를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호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정보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에게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임(법률안 제4조는 '사이버안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국가정보원이 사이버보안영역을 담당하고 있음. 이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와도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나 시민사회 등에 의한 외부적 통제가 어려운 국가비밀정보기관에게 사이버안보의 상당한 영역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감시·사찰의 가능성만 더 열어주는 결과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음. 특히 현재 어떠한 국가도 비밀정보기관에게 사이버보안의 컨트롤다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심리전' 명목으로 불법적인 댓글활동 등을 벌여서 민주주의의 간간을 훼손하고, 정치인 및 문화계 인사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사람들의 SNS 활동 등에 대한 감시 및 대응까지 했다는 사실 등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이렇듯 사이버 영역에서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사이버안보영역의 컨트롤다워를 담당하게 할 수는 없음. 또한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기관으로 개척하겠다는 현 정부의 개혁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임.
- 이 법률안에서 국가정보원의 권한 내지 역할로 부여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위원장 국가안보실장)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국가사이버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사이버안보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공동으로 맡음(안 제5조 제6항)
 - 지원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기술적 지원 실태 점검, 기술적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권한(안 제7조)
 - 사이버안보 연구기관의 설립, 혹은 지정 권한(안 제9조)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권한(안 제10조)
 - 책임기관을 대상(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및 민간부문 제외)으로 사이버 안보 실태평가 수행. 평가를 받은 책임기관의 장은 실태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1조)
 -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운영(안 제12조)
 - 책임기관의 사이버공간을 대상으로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 실시(안 제13조)
 - 국가 차원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체계 구축·운영(안 제14조)
 -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통보 및 조사 체계 구축·운영(안 제15조)
 - 단계별 국가사이버위기경보 발령(안 제16조)
 - 2개 이상의 상급책임기관에 대책본부를 구성하여야 하는 경우, 국정원이 대책본부 구성·운영(안 제17조)
- 자세한 반대의견의 내용은 2017. 2.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명의로 국회 정보위원회 사무처 등에 제출한 반대의견서 참조.(<http://act.jinbo.net/wp/29580/>)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3.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007614) (2)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007780)
소관상임위	정보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6. 27. (2) 2017. 7. 5.
대표발의	(1) 진선미(더불어민주당) (2) 천정배(국민의당)
주요내용	<p>(1)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0076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해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함.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해외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안 제3조).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외안보정보원의 시설·장비·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단서). 해외안보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7조제6항). 해외안보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해외안보정보원장 등 직원이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된 자가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해외안보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없애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 해외안보정보원장은 분기마다 회계 감사 및 직무감찰 보고서, 결산 보고서,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제19조 및 제 20조).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해외안보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안 제 21조) 대통령의 해외안보정보원에 대한 지시 또는 정보활동 요구 등은 문서로 하도록 함(안 제22조). 직원의 정치 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처벌규정을 강화 함(안 제25조·제26조 및 제27조) 직원의 정치 관여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28조). <p>(2)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00778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변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함(안 제2조).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폐지함(안 제3조)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7조제6항).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통일해외정보원의 직원에 대해 헌법과 이 법에 위배되는 명령 등에 대해 불복종하도록 하고, 정치 관여·직권남용 및 불법 감청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함(안 제14조). 누구든지 통일해외정보원장 등의 직원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통일해외정보원장이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경우에 국회 정보위원회 등이 의결로서 다시 요구하면, 국무총리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을 시에는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원장·차장 및 그 밖의 직원이 국회에서의 증언 등에 대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한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마다 회계에 관한 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0조).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불법감청 등의 죄, 공익신고 위반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신설함(안 제25조 내지 제28조).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대안 입법 필요

3) 주요 검토내용

< 가지고 있는 '수사권 폐지'의 필요성>

- 위 두 법률안 모두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사권을 직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중앙정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가진 수사권이 사실을 조작·왜곡하는 국가권력의 유용한 무기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 최근에도 유우성간첩조작사건, 내란음모조작사건 등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보안수사대)과 검찰(공안부)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중복하여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없음.
-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시민의 기본적 권리의 보장 등의 이슈 때문에 국가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나라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직무범위 관련 : 해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개편 >

- ① ‘진선미안’에는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 전복(對政府顛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를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② ‘천정배안’에는 “1. 국가안전보장과 남북통일과 관련한 통일 및 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 규정하고 있음.
- 두 법률안 모두 현행 국정원법 제3조 1항 5호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을 모두 삭제한 점에 의의가 있음. 현재 국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다른 정보기관 내지 정보조직, 나아가 각급 행정기관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거나 그들 기관의 고유업무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임. 더 나아가 검찰이나 경찰은 정보사범에 대해 내사를 비롯해 수사에 착수하거나 처분을 내리면 즉시 국정원에 통보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정보사범에 대한 신병처리나 공소보류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거나 또는 협의해야 함. 이로 인해 단순히 정보 공유를 뛰어넘어 국정원이 검찰과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국정원의 의중에 따라 형사사법 분야의 결정도 왜곡될 수 있는 것임.
- 국정원이 해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일한 입장인 것으로 보임. 다만,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권한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개편해야 하고, 국내보안정보 수집은 금지하여야 함.

<국가비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등 외부적 통제 관련>

- 두 법률안에서 제안한 것을 포함하여,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제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 및 보좌진의 지원 보장,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 등 지속적인 감시·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자세한 의견은 207. 9. 26.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정책의견서’ 참조 (<http://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528507>).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XI.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연령 인하)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43)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78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40)
소관상임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8. 2. (2) 2017. 4. 18. (3) 2017. 8. 9.
대표발의	(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2)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83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원임권을 규정하고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독자적인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임(제15조).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67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의 성숙 등 발달수준을 고려할 때 19세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권뿐만 아니라 직접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임. ■ 캐나다 하원, 호주, 독일(18세), 오스트리아(19세)등 외국 입법례의 상당수가 18~19세 이상의 사람을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08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다는

	<p>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참여 수단인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이미 청소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닌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60조 제1항 제2호).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 촉구

3) 주요 검토내용

가) 선거권연령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343)

- 개정안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참정권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쉽고 빠르게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식과 의식수준이 높아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임. 변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전통사회의 '성인'이나 '성숙'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선거권 연령의 기준을 삼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가능한 한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선거권 연령의 인하는 제한의 관점이 아니라 폭넓은 보장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임.
-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고등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행 선거권 하한연령인 19세 미만자 모두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 만큼 많다고 보기 어려움. 정치적 관심이 높아져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정치에 할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그 부작용을 예단하기도 어려움. 무엇보다 현행 선거권 하한 연령(19세) 미만자 중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는 고등교육을 받으며 성인으로 인정되는 시기인 대학생들에게까지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함.
- 민법에서는 성년을 19세로 정하고 있는바 독자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의 연령을 민법에서 19세로 정하였으므로 선거권 연령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나, 병역법 제8조는 제1국민역 편입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8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능직 채용시행의 경우에도 18세로 하한선을 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제65조), 이들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제70조)이나 갱내근로 금지(제72조) 등을 명시하고,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은 직업소개 제한 등의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밖에 혼인적령(18세), 운전면허(18세), 주민등록 발급(17세), 유언가능(17세) 연령 등의 규정이 있음. 이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고 특히 병역의 의무를 18세부터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행 선거권 연령인 19세 이상자로 선거권 연령을 한정하여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우리나라도 협약의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4조에서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같은 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기관의 적극적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같은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여기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에는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당 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는 권리가 포함됨은 당연함.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5조에서는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치참여의 권리를 차별과 불합리한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각종 국제인권규범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을 인권으로서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어 선거권을 청소년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함. 다만 청소년의 선거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구현의 수단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추후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피선거권 연령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782)

- 대의제의 원리상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자 집단과 피선거권자 집단이 동일하여야 함. 대의제 하에서 선거는 주권자 개개인의 '자기지배'가 '대표자에 의한 지배'로 전환되는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통치자 집단과 피치자 집단이 구별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함에 있어서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자신이 피선거권을 지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없는 사건에서 선거권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는 자칫 '민주주의의 들러리'를 양산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설정하여 25세 미만의 국민을 선거의 객체로만 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자들 스스로가 자신들 중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기지배'적 체제를 유지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반하는 것임.
- 독일 기본법상 선거권은 18세 이상인 국민에게 인정되고, 피선거권도 동일한 연령인 성년이 된 자에게 인정하고 있어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고 있어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게 입법을 하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2. 9. 고등학생 국

회의원이나 쿼어만이 선출되어 의회에서 활동한 바가 있음.

-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청소년의 정치 참여 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나,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자 집단과 피선거권자 집단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대의제 원리상 선거권 연령에 맞추어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낮추는 내용으로 수정 입법되어야 할 것임.²⁵⁾

다) 선거운동 연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440)

- 선거권에 선거운동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위에서 검토한 논의는 그대로 유효할 것임.
- 정치참여 수단인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정보통신의 발전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많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이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
-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선거운동 연령 규정은 위헌의 소지도 큼.
-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인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촉구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28)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3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3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64)
소관상임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7. 27. (2) 2016. 10.24. (3) 2017. 2. 14. (4) 2017. 2. 15.
대표발의	(1)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2) 박주현 (국민의당)

25) 연령과 관련해서는 18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한 박주민의원안(16. 8. 4.발의)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대안 입법이 가능할 것임.

	(3)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초과의석 인정)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2:1로 함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단위 제한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초과의석 불인정) 국회의 의원정수는 316명으로 확대, 지역구국회의원정수는 253석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63석으로 함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6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초과의석 인정) 국회의원 정수 인구 15만명당 1명 기준 산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의 비율은 3:1로 함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 (초과의석 인정)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명당 1명을 기준 산출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은 2:1로 함 30프로 범위에서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중복입후보를 허용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사표(死票)가 다수 발생하고 득표율과 실제 국회 의석 배분 간 불일치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중심의 소선거구 제도는 투표가치의 평등에 반하고 우리 사회의 소수자 등 다양한 민심을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 제도와 관련하여 득표율에 비례하는 정당 의석배분을 보장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법과제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개헌에 앞서 또는 개헌과 동시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요청이라 할 수 있음.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비례대표 선거구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권역을 나누어 권역별로 할 것인지가 쟁점 사항임. 비례대표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거대 정당은 과다 대표되고 소수 정당은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전국 단위 비례대표선거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다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물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정당 의석 독점을 일정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소선거구 다수득표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리고 전국 단위 비례대표선거구를 기본으로 하여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는 연동형 의석배분 방식이 도입되어야 함.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와 같은 수준 또는 60여 명 내외로 증원하는 것을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강화와 관련하여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절차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임. 그동안 국민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 시각은 상당 부분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에서 비롯된 것임.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모습을 자율적인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헌법 개정안의 정당 조항(헌법 헌법 제 8조 제2항)에 “공직선거 후보 추천을 포함한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국민주권의 원리 및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의 제한 등 국민에 대한 설득작업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정치관계법 개혁 TF

XII.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84)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89)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20) (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52)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7. 13. (2) 2017. 2. 8. (3) 2017. 2. 3. (4) 2017. 1. 31.
대표발의	(1) 추혜선 (정의당) (2) 권은희 (국민의당) (3)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4)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자격에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함(안 제4조). ▪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변경함(안 제19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6년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위법 부당함이 밝혀졌을 경우, 특별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규명의 범위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통치시대’를 ‘이 법 시행일까지’로 수정하여 기간을 명시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지원활동과 과거사재단 구성 및 운영 등을 추가함(안 제3조).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인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 교섭단체수와 전문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을 6인으로 하고 상임위원 중 국회추천을 4인으로 하며, 위원 자격에 민주인권 분야 국내·외 민간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함(안 제4조). ▪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9조). ▪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있어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에 대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36조). ▪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구성 이후 2년 내에 설립하여야 하며, 과거사재단의 사업에 유해발굴사업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활동의 지원, 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 치료사업, 교육 연구 및 교류사업을 추가함(안 제40조). <p>(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실규명의 목적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시 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대상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 ▪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함(안 제19조). ▪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이후 4년으로 함(안 제25조제1항). ▪ 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사보고서는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2조). ▪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배·보상특별법을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p>(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3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17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존속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 ▪ 유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피해를 입거나 입은 적이 있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 및 그 후속 절차를 위원회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 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자 보상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장의2 신설).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상황의 문제점>

-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 종료하였으나, 아직까지 진실규명 신청을 못한 유족들과 유해발굴 및 봉안 등 미진했던 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이 바람직함.
-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에 권고 하였던 사업 등 후속 사업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재단 설립을 강제하고 재단의 사업 내용을 확대하는 규정이 필요함.
-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소를 제기하지 못한 유족이 많아서 배·보상법을 제정하거나 소멸시효의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 입법방향>

- 현재 과거사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5건의 의원입법안(소병훈안, 진선미안, 권은희안, 최연혜안, 추혜선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장준하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특별법안(김해영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등 과거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안)까지 포함하면,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법안이 7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과 활동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추가적인 진실규명 등을 위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하였던 유족이나 피해자에게 신원(伸寃)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또 향후 설치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진실규명의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그 신청기간, 조사기간, 위원회활동기간 등을 현행법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또 ‘진상규명법안’과 ‘보상법안’을 하나의 법률에 두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신규 사건에서 진실규명이 된 경우, 그 유족이나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보상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함.
- 아울러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종료 이후 사실상 과거사 청산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설치에 즈음하여 혹은 그 활동종료 이전에 ‘과거사 재단’의 설립·출범이 필요함.
- 다만, 현재 관련 법률안이 4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입법안 처리과정에서의 통합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2.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2001599)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2016. 8. 16.
대표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실정의위원회가 행하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한정질서 파괴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으로 정함. 진실규명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진실정의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 진실정의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진실규명의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진실정의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함. 진실정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진실정의위원회의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등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기간 제한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실정의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장준하선생에 대한 역사적 상징성, 독재 투쟁과 보수성을 감안할 때 입법안 발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됨.
- 현재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과거사 문제라는 시각, 정파적 관점에 따른 이익의 측면에서 이를 조명하는 정치권 입장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 진실을 기억할 권리가 침해되고, 입법안이 사장되고 있음.
- 입법안 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 거의 대동소이한 연유로 과거사법이 갖고 있는 한계 또한 그대로 갖고 있음.
-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의 한계는 가해자 처벌 문제, 수사권 인정 문제, 배상·보상 문제, 과거사재단 설립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할 수 있고, 입법안도 동일한 한계를 보유하고 있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평가됨.

- 기존의 진실화해위원회를 대체하는 진실정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역할로 보이므로, 과거사정리기본법과 통합한 법안 속에서 장준하 선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만,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입법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입법촉구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3.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2000688)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2016. 7. 6.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5년 12월 1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 여부를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둬. 피해자 및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시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행해진 인권침해는 소위 부랑인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강제격리, 복지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감금(강제수용), 강제노동, 폭행, 상해, 성폭력 그리고 이로 인한 치사(살인), 정신적 장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서 ‘아오지 탄광’ 내지 ‘생자옥’에 다름 아니었음.
- 소위 부랑인에 대한 수용의 근거는 1975.12.15. 내무부 훈령 제410호로 발령한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것이었는데, 훈령에 의하면 ‘일정한 정주가 없이 관광업소,接客업소, 역, 버스터미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꺾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해하는 모든 부랑인’(제1장 제2절)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지어 ‘노년 행상, 빈 지게꾼, 성인 꺾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들’을 준 부랑인으로 규정(제1장 제3절 제6호)하여 부랑인 대책에 준하는 단속조치를 하였다. 말하자면 이들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임.
- 복지원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물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훈령에 의한 체포, 강제격리, 강제수용은 당시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등 그 어떤 근거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오직 내무부 장관의 내부 업무지침인 ‘훈령’에 의한 것이었음. 그런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훈령’에 의한 체포·격리·구금 등은 당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며, 물론 헌법이 인정한 제 권리를 구체화한 형법, 형사소송법상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것임을 재론의 여지조차 없다 할 것임.
- 신민당의 ‘부산형제복지원 신민당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형제복지원은 부산시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체이며, 전체 예산의 80%를 국고 및 시비로 지원받고 있었’는데, ‘결산보고, 안전점검, 교육의 실효성, 원생에 대한 행정지도, 감사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전혀 업무파악조차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예산 중 2년 동안 4억여원의 횡령한 사실을 보아도 ‘부산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임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당시 복지원에의 최소한의 체포·강제격리·강제수용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위반한 위헌·위법한 훈령에 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위헌·위법적인 훈령에 근거한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복지원내에서의 감금·강제노동 그리고 폭행 등 가혹행위, 치사 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리감독의 소홀에 따른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임.
- 따라서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음.

4) 답담 검토 위원회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83)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02)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74)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9. 27. (2) 2017. 3. 6. (3) 2016. 9. 27.
대표발의	(1) 이명수 (자유한국당) (2)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3) 정양석 (바른정당)
주요내용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4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동(關東)대지진 대학살을 포함하고, 한반도 내에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 ■ 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관동대지진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함. ■ 강제동원 및 관동대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군무원으로 국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에 의해 위로금 지원을 받은 유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해외동포의 유해안정을 위해 설치한 묘지에 유골 또는 시신을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규정을 신설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중에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위로금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존속기간 도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 이로 인해 한반도 내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위로금 등의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켜 국민화합에 저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관동(關東)대학살에 대한 사료가 발굴되는 등 일본의 잔학행위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의 일본 정부는 학살 이후에도 합당한 조사와 처벌과 배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왜곡·은폐까지 하였음. 또한 광복 이후에도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관동대학살에 대한 합당한 조사와 처벌과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도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1965년 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었음. 따라서 정부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그러나 한국 정부는 관동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음.
- 그러므로 기존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의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현행법상 지원받지 못하는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여러 가지 개정안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법안이 요구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735)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448)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329)
--------	---

	(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400) (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291) (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312)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9. 28. (2) 2017. 8. 9. (3) 2017. 8. 1. (4) 2017. 3. 27. (5) 2017. 1. 25. (6) 2016. 9. 13.
대표발의	(1)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2)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3)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4)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5)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6) 황주홍 (국민의당)
주요내용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7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를 부정·왜곡하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신문,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강제동원하고 학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매춘부라 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4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역사적 입증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연구 결과물이 지속적·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하나 수집된 자료와 결과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연구기관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안 제11조제2항 신설).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

	<p>것임(안 제5조의2제2항).</p> <p>(4)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등을 하거나 민간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기념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어, 소녀상 등의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하려는 민간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갈등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설치 지원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1조의4 신설). <p>(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2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안부피해자를 추모하거나 관련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한 시설물을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을 받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 지정을 위한 심의가 보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규정함(이상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2항 신설). <p>(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3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비롯해 각 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철거 요구를 하고 있는바 철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소녀상 등 기념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의 유지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문제일 뿐 아니라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 집단 성폭력, 인신매매라는 역사상 최악의 여성인권침해 사건이며, 또한 피해자들의 고령의 나이와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를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 한편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회담으로 피해자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방적 타결을 선언하고, 최근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유엔인권기구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을 출범하여 피해자들을 기만하려고 있는 상황임.
-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 다만, 현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률안이 6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입법안 처리과정에서의 통합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안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3421)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7600)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6. 28. (2) 2016. 11. 9.
대표발의	(1) 이재정(더불어민주당) (2)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p>(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34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를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p>(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76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를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인근 30미터 이내의 장소로만 축소. 그 금지장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목외집회·시위가 가능한 단서 조항을 신설(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되어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안보를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의 경우)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들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를 옥외집회·시위의 절대적인 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집시법 제11조).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경찰서장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경찰관서장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집시법 제12조).
- 위 법률안들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를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집회에서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국회에 대한 의사전달이나 정치적 압력의 행사는 오늘날 다원적 민주주의 하에서 그 자체로 허용될 필요와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헌법재판소 2009. 12. 29.자 2006헌바20·59 결정 소수의견 참조), 국회의사당 인근은 옥외집회·금지 장소에서 삭제할 필요성이 매우 큼.
- 또한 위 법률안들은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을 막고,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도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평화적 집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

7.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 사용 금지/제한 관련 법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일부개정법률안 (2001286) 2)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13) 3)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08) 4)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81) 5)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57)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7. 29. 2) 2016. 11. 16. 3) 2017. 2. 20. 4) 2017. 6. 26. 5) 2017. 7. 3.
대표발의	1) 진선미(더불어민주당) 2) 윤영일(국민의당) 3) 인재근(더불어민주당) 4) 이용주(국민의당) 5)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자 함. ▪ 경찰관은 1)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음, 2)직사 살수해서는 안 되며, 물살세기는 1,000rpm 이하로 해야 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성분을 혼합하여 살수해서는 안됨, 3)살수차 발사 전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4)살수차 사용 시 살수차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하고, 사용일시 및 장소, 사용명령자, 운용책임자, 살수방법, 경고방송 시간 및 횟수, 살수차 사용이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5)영상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p>2)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사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정거리에서 발사하도록 하고, 불법적이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물포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p>3)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수차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사용과 관련한 협의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 1)노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2)살수차 사용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3)직사 살수, 최루액 및 염료 혼합 살수는 할 수 없고, 4)살수차 사용 전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 5)살수차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p>4)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5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함 <p>5)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은 1)소요사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공공시설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고, 2)해산 목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고, 3)노약자 안전 확보에 주의하고, 4)직사 살수, 최루액 및 염료 혼합 살수는 할 수 없고, 5)물살의 세기는 1,000rpm 이하로 살수하여야 하고, 6)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경우에는 살수할 수 없고, 6)살수차 사용 전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7)분산/곡사/접근금지 살수 순서 및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8)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찰관이 살수하여야 하고, 9)세부적인 살수차 사용기준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0)살수차 내외부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살수차의 계기판 상황을 포함한 사용 현장을 영상 녹화하고 녹화한 영상을 보관하여야 함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농민 사망 이후 직사살수 금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가 높은 점, 경찰 스스로도 개혁위원회를 통해 살수차 운용방식을 시정하려 하는 점, 동일한 목적의 법안이 다수 제출된 점 등 살수차 관련 입법필요성이 매우 높음.
- 집회 참가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직사살수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인체를 향한 직사살수는 어떠한 조건을 불문하고 금지되어야 할 것인바, 제안된 모든 법안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직사살수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 진선미·인재근·박주민 의원안은 살수 세기와 절차 및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법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범위는 법률로써 정함이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민주주의 실현의 주요한 수단인 집회·시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용주 의원안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독자적인 의의가 있음.
- 박주민 의원안의 경우 살수차 사용 요건으로 “소요사태로 인한 위험”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요사태까지 이르지 않은 일반적인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반면 운영일 의원안은 “불법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서 살수차 운용이 금지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집회 참가자들로서는 당해 집회에서 살수차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능할 수 없는 불안상태에 놓이게 되고 경찰행정의 재량범위가 여전히 지나치게 넓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규정이 필요함.
-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을 위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우발적인 소방용수 고갈에 따른 불측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바, 경찰청장이 미리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인재근 의원안은 소방용수 남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

XIII.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43)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6. 11. 1.
대표발의	김종훈 (민중당)
주요내용	▪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인되도록 조문 신설(안 제94조 제2항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부과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그러나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8953 판결 등 다수)
-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달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본의 판례를 답습한 것이라는 점, 근로조건에 대한 대등결정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조항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력한 비판이 전개되어 왔음
-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2013년 임금피크제의 도입, 2016년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정당화 근거로 위 대법원이 판시한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제시하여 노동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였음
- 위 개정 법률안은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에 신설하여, 현재 대법원이 유지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과 관련된 판례 법리의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함
- 위 입법 목적에 대하여는 찬성하나, 위 개정안과 같은 개정만으로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임. 나아가, 취업규칙 제도가 근로조건 대등결정원칙에 어울리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 다만 취업규칙 제도의 존속을 전제로 위 개정안이 논의된다면, 다음과 같은 입법의 미비에 대하여는 수정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동의 주체는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과반수 근로자(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본문)인데, 위 개정 법률안은 동의 주체로 “근로자”만을 거시하고 있어, 위 법문과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적용될 여지를 봉쇄하기 위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는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무효로 간주(看做)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신실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 후 입법할 것을 제안함 :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간주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 신설)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상해고)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16)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39)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34)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81)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53)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6. 7. (2) 2016. 7. 7. (3) 2016. 7. 25. (4) 2017. 8. 12. (2) 2017. 3. 22.
대표발의	(1) 이인영(더불어민주당) (2) 노회찬(정의당) (3) 윤종오(민중당) (4) 문진국(더불어민주당) (5) 윤영일(국민의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함.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계획, 경영상 이유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명시함.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함. 해고근로자 우선재고용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① 근로자에게 해고를 당할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고, ② 일시적으로 다수의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케 하여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므로, 그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
- 현행법은 오직 실제적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해석은 법원에 맡겨진 바, 대법원은 ‘도산회피설’의 입장을 취하다가, 사용자측의 재량을 더 넓히는 ‘합리적 필요성설’로 확대하였고, 현재는 더 나아가서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의 경우까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포함된다고 하는 ‘강랑경영설’을 취하고 있음. 즉,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왔음. 이는 법원에 입법의 권한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그러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범위 및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은 타당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은 헌법과 그 구체화로서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노동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노사간의 신뢰기반의 구축이 미진하고, 서구와 같은 유형의 노동의 경영참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음. 그러므로 성실하게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위 개정안들은 ‘합의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완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나, 현행법의 추상적 표현보다는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타당함.
- 한편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규정의 문언 상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됨. 그러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그 규모에 따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요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현행법은 우선재고용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이 규정도 단순히 추상적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손해배상의 경우도 법에 명시하여 해석다툼의 여지를 없앴다는 측면에서 타당함.
- 재고용의 요건을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재고용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위 개정안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직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라 규정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현행법의 요건보다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함.
- 다만, 이러한 우선재고용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대한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재고용 요건의 확대만으로 재고용이 제고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1) 법안개요

(의안번호)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03)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43)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72)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25)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74)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66)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85) (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011)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12)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80)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85)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5. 30. (2) 2016. 7. 13. (3) 2016. 8. 12. (4) 2016. 10. 26. (5) 2017. 3. 23. (6) 2017. 7. 13. (7) 2017. 7. 13. (8) 2017. 7. 14. (9) 2017. 7. 27. (10) 2017. 8. 18. (11) 2017. 9. 8.
대표발의	(1)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2, 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4) 김삼화 (국민의당) (5) 유승민 (바른정당) (6)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7)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8)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9)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10)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11)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03) ▪ 포괄선정임금계약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2조의2 신설 - 제22조의2(임금포괄선정계약의 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1.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 노동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고 그 서류를 보존하게 하여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도록 함.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43) ▪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9호 신설, 53조제2항 삭제). 아울러, 현재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1주 연장근로한도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시킴(안 제69조).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72) ▪ 근로시간·휴게시간의 특례 및 적용 제외 업종에 관한 규정을 삭제(제59조, 제63조 삭제)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25)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존치시키되 그 대상을 9·15 노사정 합의 내용과 같이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의 근로시간은 12주 평균 60시간(업무상 재해의 만성으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74)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0조제4항·제5항·제6항 신설).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최대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단위 한도를 설정함(안 제53조제1항 후단·단서 신설). ▪ 연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당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후 연속 11시간(임산부의 경우 연속 13시간,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속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2항·제4항 신설). ▪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4항 신설).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66) ▪ 특례규정에서 운수업 제외(안 제59조제1호). (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985) ▪ 운수업의 시내·시외버스운송업 제외(안 제59조제1호).
--	---

(8) 일부개정법률안 (2008011)
▪ 운수업과 통신업 제외(안 제59조제1호 및 제2호).
(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212)
▪ 운수업과 의료업 제외(안 제59조제1호 및 제3호).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80)
▪ 연장근로의 연간 상한을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3개월 연속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최대 144시간 이내로 제한(안 제53조 제3항 신설)
(1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85)
▪ 근로시간 특례규정 중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안 제59조 제4호)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들
- 2014년 1인당 노동시간은 2285시간으로 OECD 1위, 2015년 1인당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기록함. 장시간 노동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깨뜨리며, 노동자를 과로로 인한 다양한 질병에 노출시키며,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노동 시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부분임.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첫째, “1주당 근무시간” 개념의 재정립, 둘째, 포괄임금제의 제한, 셋째, 특례규정 폐지, 그 외 노동시간 측정과 기록 보존 및 보고, 연장 근로시간의 연단위 한도 규정,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노동을 하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인정함이 필요함.
- 우선, 1주당 노동시간의 재정립이 필요함.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여기에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석으로 '1주'에서 휴일을 제외하고 있어서 사실상 주당 근무 시간 한도는 68시간이 됨.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무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의안번호2000843).
- 다음으로, 포괄임금제의 제한이 필요함. 현재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일괄 적용하는 포괄임금제가 구분별하게 이용되고 있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게 할 필요가 있음(의안번호2000003).
- 노동시간 제한 특례규정 폐지가 필요함(의안번호 2001572).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통신업, 의료업 등 일부만을 제외하는 안(의안번호 2007966호, 2007985호, 2008011호, 2008212호)이나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안(의안번호 2009185)도 방향은 좋으나 미흡
- 노동시간 측정과 그 기록의 보존이 필요함.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노동자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도 어렵고,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용자의 주장과 다른 경우가 발생함.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하여 노동시간 관리의 간격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음(의안번호2000003호, 2006374호).
- 연장 근로시간의 연 단위 한도 규정, 불법 근로시간 연장 시 부담금 부과·징수, 근로시간 외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노동을 하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여 통상임금

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안도 바람직함(의안번호2006374호). 다만 현재 개정안(의안번호 2008580호는 360시간, 2006374호는 250시간)의 최대 시간은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명세서)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89)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7. 2. 24.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안 제48조 제1항) ▪ 현행법상 대통령령(법 시행령 제27조)에 위임되어 있는 임금대장 기재 사항을 법률상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으로 규정 ▪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작성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16조 제1항 제3호)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8조 제2, 3항)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매해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급되는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대장의 내용이나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액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알기 어려움.
-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낮게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된 임금액 확정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장기간 계속되는 상황임.
- 교섭력이 약한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명세내역에 대한 접근권을 일률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사용자의 적법한 임금산정 및 지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정임.
- 다만,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인 안 제116조 제1항 제3호에서 ‘임금명세서를 작성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만을 규정하고 있고, 임금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 부분도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 차별금지)

1) 법안개요

(의안번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916866)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7. 7. 7.
대표발의	김상화 (국민의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에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고용형태'를 추가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동일한 사업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2를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기간제법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고용은 안정되지만, 임금과 복리 후생 등 처우에 있어서 차별적 상태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임 - 기간제법에는 차별시정 규정이 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법률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실정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규정의 신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남·녀 간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입법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기본 원칙을 근로기준법에서 재확인한 것임. 이로서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됨으로 입법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6조의2에 대한 별칙규정이 같이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개념 확대)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655)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98)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441)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7. 4. (2) 2016. 8. 9. (3) 2017. 2. 6.
대표발의	(1)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2)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을 신설²⁶⁾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1990년대 이후 노동유연화 경향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 및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유사함. 그러나 이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 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그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해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지, 보수 미지급, 계약에 없는 노무제공 강요 등 불이익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일부 직종 외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상 근로자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조합을 통한 처우 개선도 어려운 상황임.
- 세계인권선언 및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에 기초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이 존재하

26)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그 밖에 다른 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송을 통해 「노조법」 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나 골프장 캐디 외에는 인정받은 사례가 없음. 그러나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근로계약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종속성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노무제공자들의 단결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종속성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 9. 1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헌법상 노동3권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발표한바 있으며, 2017. 4. 6. 다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회의장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권고한바 있음.
- 그러므로 위 개정안과 같이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 시킴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임.
- 한편 전술한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2016년 이미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자 이정미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002357, 제안일자 2016. 9. 21.)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대해 민변은 『2016년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2016. 11. 28. 발행)(pp.87~88)에서 위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러므로 위 법률안과 같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역시 조속히 요구된다고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회사 대체인력 투입금지)

1) 법안개요

(의안번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05631)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7. 2. 14.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사업의 원사업주(또는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사업주(또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정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 대체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안 제43조제3항 신설, 안 제91조), 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내용에는 사용자가 정의행위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 및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안 제91조).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간접고용이 만연한 현실에서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경우 원청회사가 정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회사에 도급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있음. 또한 파견사업주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정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사업주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고 있음. 심지어 위장도급이나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실제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할 원청회사가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정의행위를 무력화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정의행위 기간 중 정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채용, 대체근로, 도급·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제43조) 현행법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에 대하여만 대체근로 등을 금지하고 있음. 판례도 도급계약이나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수급사업주나 파견사업주 소속 노동자들의 정의행위시 원사업주나 사용사업주의 대체인력 투입 등이 금지된다는 해석론을 제시한바 없음. 고용노동부 또한 현행 노조법 제4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청업체의 업무 일부가 하청업체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 원청업체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 아니므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정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음(1998. 6. 17. 협력68140-226). 결과적으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노사 양측의 무기대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현행법의 대체근로 등 금지 규정이 간접고용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없음.
-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간접고용 문제에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원청회사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하청노동자들은 원청회사와의 사이에 무기대등의 원칙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단체행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물론 원청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묻는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용이하지 않고, 사용자 개념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법개정만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현실에서 원청회사와 사용사업주의 정의행위 무력화 시도를 제어할 수 있는 법개정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시의적절함. 더욱이 개정안은 진정도급과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원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대체인력 투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범력이 강함.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한편, 현행 노조법은 정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 등을 금지하고 있어 사용자가 정의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채용 또는 대체인력 투입 등을 준비하여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실효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실효적 보장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손해책임 제한)

1) 법안개요

(의안번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57)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7. 1. 18.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고를 주되게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발생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고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노동조합의 통제에서 이탈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발생한 손해가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고를 주되게 동반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에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손해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쟁의행위 등의 원인과 경위, 사용자 영업의 규모, 시장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유무, 배상 의무자의 경제상태, 각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이 법원에서 문제가 된지 20년이 넘었고, 쟁의권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태로까지 이어진 지도 10년이 넘어 가고 있으나, 법원의 해석은 역시 크게 변한 것이 없으며, 축적된 사례들은 사용자들에

- 게 노동조합 활동 통제를 위한 좋은 무기만 제공
-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 남용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법원의 광범위한 인용은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형해화시키고, 단체행동권 보장의 당연한 효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가 확인하고 있는 민사면책의 원칙을 무의미하게 함
- 사용자와 법원의 이런 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규정 중에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큼
- 그동안 입법론으로 노동쟁의 대상(목적의 정당성) 확대, 손해배상 청구의 물적 대상 제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적 대상 제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직접 손해에 한정, 손해배상액의 경감 청구,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제한 등이 제시되어 왔으나,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 중에서 노동쟁의 대상(목적) 측면을 제외하고, 손해배상의 인적·물적 범위 제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음
- 비록 쟁의행위 정당성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급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부분을 빈틈없이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현실적으로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06236)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7. 3. 17.
대표발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는 영업상 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 정보제공·열람청구에 응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제1항, 제2항 신설) ▪ 사업주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보제공·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열람 여부 결정 및 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제3항, 제4항, 제38조의2 신설).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업무 중 수시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도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 유해성분의 노출 수준 등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함. 노동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임. 가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 등을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MSDS의 많은 정보가 '영업비밀'로 표시 - 2014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159개 사업장 조사에 의하면 MSDS 영업비밀 기재 비율이 67%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 재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도 사업주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함.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도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심지어 정보공개청구소송 내지 산재소송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주장을 인용하며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함.
- 최근 대법원은, 사업주와 행정청이 영업상비밀을 이유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공정에서 취급한 유해화학물질 종류, 안전검사 실시 현황, 화학물질 누출 시 배출처리 시스템 현황, 보호구 지급 현황 등에 대한 공개 요구를 거부한 사건에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였음(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 따라서 개정안이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열람 여부 결정 및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는 입법취지 및 내용은 매우 바람직함.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산재사건에 있어 충분한 조사·심사가 담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할 것임.
- 다만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정보공개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안 제38조의2 제2항), 업무상 재해의 입증을 위한 정보 중 최소한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사업주의 영업비밀 항변을 전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고, 어떠한 정보가 심의에서 제외되는지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을 무제한적으로 수용해온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심의 제외 대상 정보를 규정할 우려가 있음. 최소한의 심의도 받지 않는 정보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²⁷⁾는 심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등 보다 구체적 위임을 통해 그 대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 규정에서 차용한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있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중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됨.

10. 산업안전보건법지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산업안전보건법지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2000109) (2) 산업안전보건법지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2003679)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6. 7. (2) 2016. 11. 17.
대표발의	(1) 심상정 (정의당) (2) 김중훈 (민중당)
주요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지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200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산업안전보건법지에 대한 가중처벌,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 등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지의 가중처벌(근로자나 종사자 사망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과실범(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집행유예 결정기간(형집행 종료 후 5년경과 전에 다시 범하면 집행유예불가) 등을 규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지의 경우 가중처벌을 예정함(안 제3 내지 제5조). ▪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의 3배 이상 책임지도록 하고(안 제7조), 양벌규정 마련(안 제6조) ▪ 사업주가 처벌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허가, 면허,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8조). (2) 산업안전보건법지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률안(2003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범위에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사업주의 범위에 수급사업주와 원사업주를 포함시킴(안 제2조) ▪ 산업안전보건법지를 범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상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포함(안 제3조). ▪ 위 중대재해를 2회 이상 야기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2가지 이상 동시에 위반하여 중대재해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사망의 경우 7년 이상 징역, 상해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안 제4조) ▪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의 3배 이상 책임지도록 하고(안 제6조), 양벌규정 마련(안 제5조) ▪ 사업주가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고 양벌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산재보험료를 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안 제7조). ▪ 사업주가 처벌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허가,

	<p>,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그 밖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작업증지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진단을 완료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를 12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에 상주시켜야 함(안 제9조).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산업재해 관련하여 실제 수사 및 처리된 현황(대검찰청 집계, 2012~2015년)을 살펴보면 20,744명 중 680명이 구속수사를 받았고, 3,97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16,122명이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건에 그쳐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등,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는 법적책임은 크지 않음. 2016년 한해동안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777명, 다친 노동자가 9만여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 비율, 처벌의 정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노동자들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담보로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창출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사업주가 산업재해에 대하여 이처럼 법적 책임을 미미하게 지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법률안의 문제와 실제 법 적용 및 집행의 문제가 맞물려 있어 가중처벌 법률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임. 그러나 가중처벌 법률안을 통해 가능한 법적제재의 하한을 정하는 것은 법 적용 및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실질적인 처벌강화와 이를 통한 산업안전보건강화가 목적인다는 측면에서 두 제정 법률안이 추구하는 바가 대동소이하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 3배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규정과 양벌규정,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은 같으나, 사내하도급근로자 및 수급사업주 등의 포함여부, 부상 사고의 포함여부,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 유무, 집행유예 결정기간 규정의 유무, 산재보험료를 결정특례 적용제외 규정 유무, 가중처벌 형량 등의 차이가 존재함.
-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 집행유예 결정기간 등을 두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처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산재보험료를 결정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제재도 필요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05)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10) (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17)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1) 2016. 6. 7. (2) 2016. 6. 7. (3) 2016. 6. 28.
대표발의	(1) 한정애(더불어민주당) (2) 심상정(정의당) (3) 정부
주요내용	<p>(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도급인이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함(안 제28조 제1항). 도급 사업주가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에 제23조·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대처 요령 등의 훈련을 추가함(안 제29조 제1항). 사업주가 중대재해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51조의 2)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함(안 제66조의 2 제1항, 제67조의 2 제1호, 제68조 제2호). 사업주 및 도급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범했을 때는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66조의 2 제2항). <p>(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직무에 대해 규정된 시행령 제24조를 이 법에 규정하고, 직무의 범위에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안 제18조제3항)하여 그 책임성을 분명히 함.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에 국민의 안전·생명과 밀접한 철도, 원전 등 유지보수 업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의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함(안 제28조제1항).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지역인근 주문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안 제49조의2제11항), (안 제49조의2제12항). <p>(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안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p>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 인가 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인가를 하도록 함. 사업주가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매회 안전·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p>
--	---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하여 빈번하게 하청근로자들의 중대재해 발생, 원청의 책임 회피로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피해구제도 미흡하므로,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함
- 유해·위험 작업을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거나 도급 사업주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해야 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에 제23, 2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유해·위험물질 정보 제공 및 사고대비와 위험대처 요령 등의 훈련을 추가한 개정 방향은 원칙적으로 바람직(의안번호 2000105호) - 다만 도급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법 제51조의 2) 또는 벌칙(법 제70조) 규정으로 사후적인 제재만 있을 뿐임. 그러므로 도급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작업중지 요청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도급 인가 기간의 설정 정부안으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미흡 (의안번호 2000517호)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노동위원회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8843)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3596)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2799)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1767)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1669)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8. 29. (2) 2016. 11. 15. (3) 2016. 10. 21. (4) 2016. 8. 23. (5) 2016. 8. 19.
대표발의	(1) 이용득(더불어민주당) (2) 이정미(정의당) (3) 정부 (4) 권미혁(더불어민주당) (3) 김삼화(국민의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법률안은 모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1), (3), (4)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사의무를 명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의무화함. ▪ (1), (3), (4)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도 명시함. ▪ (1), (3), (4), (5)는 성희롱 발생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외 행위자와 피해 근로자의 분리, 유급휴가의 실시 등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함. ▪ (1), (2), (4), (5)는 고객 등에 의하여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의무로 명시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제20대 국회에 대한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하면서, 성희롱 피해 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음. 그 내용으로, ① 성희롱 피해 발생시 유급휴가 부여,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취할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할 것, ② 성희롱 피해 접수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를 명시하고 조사 내용 누설 금지, 임시분리조치 등을 통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성희롱 피해자 외 노동자가 신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하는 경우에도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여 보복조치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것, ④ 성희롱 신고 등을 이유로 한 금지되

는 불리한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행위의 규범력을 높일 것 등을 밝힌 바 있음.

- 위 법률안들은 다소 내용을 달리하나, 필요한 개정 방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고 있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임.
- 정부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들은 2017. 9. 22.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대안반영을 이유로 폐기되었음. 정부안은 필요한 개정 방향의 일부밖에 담지 못하고 있는바, 다른 법률안에서 제시된 개정방향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1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안개요

(의안번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2005054)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7. 1. 12.
대표발의	서형수(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의견

3) 주요 검토내용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사업자에게 보완·조정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적절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협의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부실 작성자에 대한 처벌, 제재 규정만이 있을 뿐, 이에 대한 재검토, 반려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 부실 작성에 대한 제도적 흠결이 치유될 것으로 기대됨
- 추가로 거짓 부실 작성이 공사 착공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거나, 인허가 담당청에 공사중지 요청을 하도록 하고, 인허가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요청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실질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1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1) 법안개요

법안명(의안번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2004473)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2016. 12. 20. / 신속처리안건 상정일자(2017. 2. 13.)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슴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9명이 참여하는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가슴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2)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3) 주요 검토내용

-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2015. 8. 4.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제1기 특조위')가 구성되어 조사활동을 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에 의해 2016. 6. 30. 강제로 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더불어 가슴기살균제사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본 법률안은 세월호참사와 가슴기살균제사건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자 제정되었음.
- 제1기 특조위가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및 행정기관들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 법률안은 조사업무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 그 권한을 강화하였음(위원의 신분보장 제외사유, 활동기간의 명확화, 위원장의 파견 철회권, 특검요청 권한에 완전간주규정 도입,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등).
- 두 참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함. 그리고 진상규명이 지연될수록 피해자를 권리는 더욱 침해되는 측면이 있음. 두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본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4) 담당 검토 위원회 : 민변 세월호 참사 대응 TF